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995호 2013. 12. 9.(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 1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5호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 4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8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고시 ----- 5
-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119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 고시 ----- 39

공 고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1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7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도로명 및 도로구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02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3. 12. 02.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북항 배후부지 8개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붙임조서 참조)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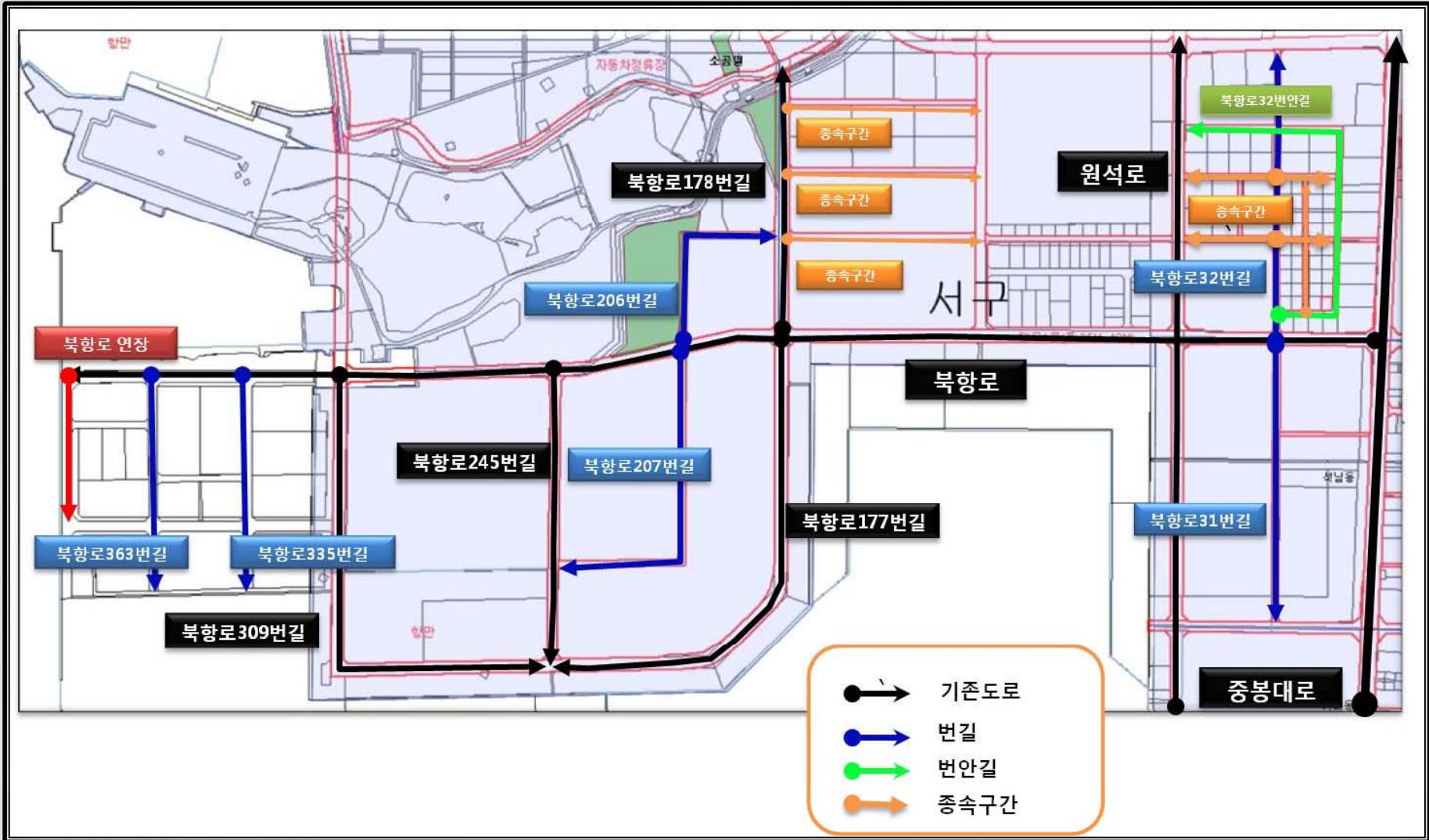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부여 조서

연번	도로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km)	폭(m)		
1	로	북항로(구간연장)	석남동	648	원창동	437-23	3.083(종전) 4.33(변경)	34	20	인천의 대표적 항구인 북항을 지나는 도로
2	길	북항로32번길	원창동	386	원창동	381-79	0.624	15.78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길	북항로32번안길	원창동	381-88	원창동	381-79	0.690	14.85	20	북항로32번길에서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길	북항로31번길	석남동	641-1	석남동	647	0.837	20.51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길	북항로206번길	원창동	395-2	원창동	395-3	0.608	20.42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길	북항로207번길	원창동	395-2	원창동	395-1	0.996	20.42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2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7	길	북항로335번길	원창동	437-23	원창동	397-12	0.622	26.14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3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길	북항로363번길	원창동	437-23	원창동	397-12	0.626	24.03	20	북항로 시작지점에서 약 36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북항 도로명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5호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

2009.08.21일자로 조합설립인가 된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이에 고시합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조합명칭

- ①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② 조 합 명 칭 : 석남2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①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82, 586번지 일원
- ② 면 적 : 51,447.2㎡

3. 조합 설립인가 취소 처분에 관한 사항

- ① 조합 설립인가 취소일자 : 2013. 12. 09
- ② 취소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의한 조합 설립인가 취소(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조합의 해산 신청)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8호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 칭 : 도시관리계획(검단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마전 · 금곡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가. 도 로 : 변 경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50	7,981	68,426.8	5	887	8,870.0	29	5,431	43,934.0	16	1,663	11,882.6	-	-	3,740.2
	변경	51	7,981	68,426.8	5	887	8,870.0	29	5,431	43,934.0	17	1,663	11,882.6	-	-	3,740.2
대로	기정	2	162	422.0	-	-	-	-	-	-	2	162	379.0	-	-	43.0
중로	기정	4	502	6,321.9	-	-	-	1	66	990.0	3	436	5,232.0	-	-	99.9
소로	기정	44	7,317	61,682.9	5	887	8,870.0	28	5,365	42,944.0	11	1,065	6,271.6	-	-	3,597.3
	변경	45	7,317	61,682.9	5	887	8,870.0	28	5,365	42,944.0	12	1,065	6,271.6	-	-	3,597.3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접	종 접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58	3.5 (25~28.5)	보조간 선도로	82 (8,510)	동측 지구계	광로 3-23호선	일반 도로		2000. 10.16	
기정	대로	3	61	3.5 (25~28.5)	"	80 (4,420)	광로 3-23호선	대로 3-59호선	"		1999. 6.17	
기정	중로	2	228	15	"	66	대로 3-61호선	중로 3-79호선	"		"	
기정	중로	3	79	12	"	262	중로 2-228호선	마전동 899-4	"		"	
기정	중로	3	80	12	"	36	대로 3-61호선	소로 2-12호선	"		1999. 6.17 "	
기정	중로	3	171	12	"	138	대로 3-61호선	소로 1-1호선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62	중로 3-171호선	중로 3-79호선	"		"	
기정	소로	1	2	10	"	123	대로 3-58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1	3	10~13	"	280	대로 3-58호선	소로 2-19호선	"		"	
기정	소로	1	4	10	국지 도로	55	중로 1-115호선	소로 3-16호선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1	5	10	"	167	소로 2-12호선	소로 2-9호선	"		"	
기정	소로	2	1	8	"	230	대로 3-61호선	소로 2-4호선	"		"	
기정	소로	2	2	8	"	156	중로 3-171호선	소로 2-1호선	"		"	
기정	소로	2	3	8	"	151	소로 1-1호선	소로 2-23호선	"		"	
기정	소로	2	4	8	"	311	중로 2-218호선	소로 1-1호선	"		"	

※ ()은 지구 외 사항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5	8	"	320	소로 2-12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6	8	"	18	중로 3-79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7	8	"	38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9	8	"	173	중로 3-79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10	8	"	112	소로 2-9호선	소로 2-24호선	"		"	
기정	소로	2	11	8	"	299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12	8	"	379	소로 1-5호선	소로 2-5호선	"		"	
기정	소로	2	13	8	"	40	대로 3-61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2	14	8	"	121	대로 3-58호선	소로 1-2호선	"		1995. 11.17	
기정	소로	2	15	8	"	260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	"		"	
기정	소로	2	16	8	"	250	소로 1-2호선	소로 1-3호선	"		"	
기정	소로	2	17	8	"	103	소로 1-2호선	소로 2-18호선	"		"	
기정	소로	2	18	8	"	161	소로 2-16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19	8	"	249	소로 2-18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2	20	8	"	145	소로 2-21호선	소로 2-19호선	"		"	
기정	소로	2	21	8	"	648	소로 1-2호선	마전동 1046	"		"	
기정	소로	2	22	8	"	166	소로 1-3호선	소로 2-21호선	"		"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2	23	8	"	157	소로 2-1호선	소로 2-3호선	"		"	
기정	소로	2	24	8	"	149	소로 2-11호선	소로 2-10호선	"		"	
기정	소로	2	25	8	"	290	소로 2-11호선	마전동 1032	"		"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6	소로 2-25호선	소로 2-11호선	일반 도로		1999. 6.17	
기정	소로	2	27	8	"	35	대로 3-58호선	소로 2-15호선	"		"	
기정	소로	2	28	8	"	250	소로 2-15호선	소로 2-15호선	"		"	
기정	소로	2	29	8	"	118	중로 2-218호선	소로 2-1호선	"		2000. 10.16	
기정	소로	3	9	6	"	59	소로 2-12호선	소로 3-11호선	"		1999. 6.17	
기정	소로	3	10	6	"	113	소로 2-14호선	소로 3-9호선	"		"	
기정	소로	3	11	6	"	173	소로 1-2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3	12	6	"	37	소로 2-11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3	15	6	"	138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6	6	"	232	소로 1-4호선	소로 2-21호선	"		"	
기정	소로	3	17	6	"	117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8	6	"	38	중로 1-115호선	소로 3-16호선	"		"	
기정	소로	3	19	6	"	74	소로 2-22호선	소로 3-16호선	"		"	
신설	소로	3	23	5	"	28	소로 3-20호선	소로 2-12호선	"		-	
기정	소로	3	20	5	특수 도로	49	대로 3-58호선	소로 2-12호선	보행자 전용 도로		1999. 6.17	
변경	소로	3	20	5	특수 도로	21	대로 3-58호선	소로 3-23	보행자 전용 도로		"	
기정	소로	3	22	4	"	35	대로 3-58호선	소로 2-15호선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 3-23	- 소로 신설 폭원 : 5M, 연장 : 28M	- 보행자전용도로 연장 축소에 따른 일반도로 신설
소로3-20	소로3-20	- 연장 축소 49M → 21M	- 기존 건축물 차량 진출입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 연장 축소

나.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전동 908- 3	2,589.4	-	2,589.4	'99. 6.17	
기정	2	주차장	노외주차장	마전동 928-16	1,037.7	-	1,037.7	'99. 6.17	
	계		2개소		3,627.1	-	3,627.1		

다. 공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6	금곡공원	어린이공원	금곡동 727-8	3,753.7	-	3,753.7	'95.11.17	
기정	27	마전제1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07	4,606.2	-	4,606.2	'95.11.17	
기정	28	마전제6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29-1	2,662.5	-	2,662.5	'95.11.17	
기정	29	마전제5공원	어린이공원	마전동 906	4,048.0	-	4,048.0	'95.11.17	
	계		4개소		15,070.4	-	15,070.4		

라. 녹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922-1	199.8	-	199.8	'99. 6.17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마전동 926-2	190.1	-	190.1	'99. 6.17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금곡동 722-1	409.0	-	409.0	'00.10.16	
	계		3개소		798.9	-	798.9		

마. 학 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학 교	초등학교	금곡동 721-1,721-2	12,930.2		12,930.2	'95.11.17	
기정	3	학 교	중 학교	마전동 908-1,908-2	19,471.9	-	19,471.9	'95.11.17	
	계		2개소		32,402.1	-	32,402.1		

바. 공공청사 : 변 경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D-4	공공청사	보건소	동사무소	마전동 927-4	3,572.1	-	3,572.1	2006.5.15	

사.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사회복지시설	금곡동 729-11	331.0	-	331.0	2012. 1.3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가. 단독주택용지(A-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대지면적은 180㎡이고 권장면적은 330㎡이상으로 한다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대지분할을 할 경우 1개필지가 획지계획에 의한 최소면적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삭 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3	7,808.9	1-1	350.9	-	A-1	3	7,808.9	1-1	350.9	-
			1-2	350.8	-				1-2	350.8	-
			2	147.8	공동건축권장				2	147.8	공동건축권장
			3	143.4	공동건축권장				3	143.4	
			4	253.2	-				4	253.2	-
			5	43.7	-				5	43.7	-
			6	274.9	-				6	274.9	-
			7-1	264.6	-				7-1	264.6	-
			7-2	529.0	2				7-2	529.0	2
			7-3-1	462.7	2				7-3-1	462.7	2
			7-3-2	518.3	2				7-3-2	518.3	2
			7-4-1	257.8	-				7-4-1	257.8	-
			7-4-2	257.8	-				7-4-2	257.8	-
			7-4-3	257.7	-				7-4-3	257.7	-
			8	360.0	-				8	360.0	-
			9-1	213.6	-				9-1	213.6	-
			9-2	285.0	-				9-2	285.0	-
	10-1	477.2	2	10-1	477.2	2					
	10-2	477.0	2	10-2	477.0	2					
	11	247.4	-	11	247.4	-					
	12	153.3	-	12	153.3	-					
	13	497.7	2	13	497.7	2					
	14-1	328.3	-	14-1	328.3	-					
	14-2	328.4	-	14-2	328.4	-					
	14-3	328.4	-	14-3	328.4	-					
	4	2,047.6	1-1	268.0	-	4	2,047.6	1-1	268.0	-	
			1-2	267.9	-			1-2	267.9	-	
			1-3	266.1	-			1-3	266.1	-	
2			864.1	4	2-1			220.5	-		
					2-2			221.4	-		
					2-3			211.2	-		
					2-4			211.0	-		
3	381.5	2	3	381.5	2						

* 변경사유 : 획지 분할에 의한 획지면적 및 번호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5	5,752.0	1	964.2	4	A-1	5	5,752.0	1	964.2	4			
			2-1-1	264.6	-				2-1-1	264.6	-			
			2-1-2	264.5	-				2-1-2	264.5	-			
			2-2	328.0	-				2-2	328.0	-			
			2-3	454.4	2				2-3	454.4	2			
			4-1	197.2	-				4-1	197.2	-			
			4-2	310.7	-				4-2	310.7	-			
			5	283.8	-				5	283.8	-			
			6	541.1	2				6	541.1	2			
			7	810.4	2				7-1	419.4	-			
									7-2	391.0	-			
									8	302.7	-			
									9	279.2	-			
									10	435.7	2			
				11	315.5	-								
		10	2,562.1	1	72.4	-		10	2,562.1	1	72.4	-		
				2-1	342.8	-				2-1	342.8	-		
				2-2	465.4	-				2-2	465.4	-		
				2-3	465.4	-				2-3	465.4	-		
				3	407.3	-				3	407.3	-		
				4	808.8	2				4	808.8	2		
		11	2,985.4	1-1-1	396.6	-		11	2,985.4	1-1-1	396.6	-		
				1-1-2	397.1	-				1-1-2	397.1	-		
				1-2	397.8	-				1-2	397.8	-		
				1-3	330.0	-				1-3	330.0	-		
				2	232.3	-				2	232.3	-		
				3	382.7	2				3	382.7	2		
		12	3,186.2	1	929.0	3		12	3,186.2	1-1	232.8	-		
										1-2	259.1	-		
										1-3	437.1	-		
						2	470.4			-	2	470.4	-	
						3	257.9			-	3	257.9	-	
						4	51.1			-	4	51.1	-	
						5	177.1			-	5	177.1	-	
						6	540.2			-	6	540.2	-	
		13	2,265.9	7	725.1	2		13	2,265.9	7	725.1	2		
						8	35.4			-	8	35.4	-	
						1	690.9			2		1-1	342.8	-
						2	272.3			-		1-2	348.1	-
						3-1	287.2			-		2	272.3	-
						3-2	287.6			-		3-1	287.2	-
						4	304.7			-		3-2	287.6	-
				5	205.7	-		4	304.7	-				
				6	217.5	-		5	205.7	-				
								6	217.5	-				

* 변경사유 : 획지 분할에 의한 획지면적 및 번호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15	1,887.3	1	437.7	-	15	1,887.3	1	437.7	-	
			2-1	281.6	-			2-1	281.6	-	
			2-2	281.6	-			2-2	281.6	-	
			3-1	518.9	2			3-1	518.9	2	
			3-2	326.3	-			3-2	326.3	-	
			4	41.2	-			4	41.2	-	
	16	1,238.8	2	1,100.0	5	16	1,238.8	2	1,100.0	5	
			4	138.8	-			4	138.8	-	
	17	1,900.3	1	367.0	2	17	1,900.3	1	367.0	2	
			2	231.6	-			2	231.6	-	
			3	200.0	-			3	200.0	-	
			4	374.2	2			4	374.2	2	
			5-1	222.1	-			5-1	222.1	-	
			5-2	273.1	-			5-2	273.1	-	
	18	3,602.4	1-1	279.7	-	18	3,602.4	1-1	279.7	-	
			1-2	279.7	-			1-2	279.7	-	
			1-3	279.8	-			1-3	279.8	-	
			1-4	325.4	-			1-4	325.4	-	
			1-5	311.1	-			1-5	311.1	-	
			1-6	294.6	-			1-6	294.6	-	
			1-7	294.5	-			1-7	294.5	-	
			1-8	278.3	-			1-8	278.3	-	
			2-1	303.8	-			2-1	303.8	-	
			2-2	303.9	-			2-2	303.9	-	
			2-3	651.6	2			2-3-1	275.6	-	
								2-3-2	376.0	-	
	20	5,022.6	1	268.1	-	20	5,022.6	1	268.1	-	
			2	1,522.4	5			2	1,522.4	5	
			3	264.1	-			3	264.1	-	
			4-1	286.1	-			4-1	286.1	-	
			4-2	222.8	-			4-2	222.8	-	
			6	512.2	2			6-1	249.0	-	
			7	244.5	-			6-2	263.2	-	
			8	496.1	2			7	244.5	-	
			9	312.4	-			8	496.1	2	
			10	563.0	2			9	312.4	-	
			11	330.9	-			10	563.0	2	
				11	330.9	-					

* 변경사유 : 획지 분할에 의한 획지면적 및 번호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1	21	3,997.4	1-1	258.7	-
			1-2	258.6	-
			1-3	258.7	-
			2-1	236.1	-
			2-2	236.0	-
			2-3	237.0	-
			3	543.7	2
			4	223.1	-
			5-1	271.6	-
			5-2	271.5	-
			5-3	271.7	-
			6-1	371.5	-
			6-2	330.5	-
			7	228.7	-
			22	2,136.2	1
	2	231.2			-
	3	1018.9			3
	4	248.7			공동건축권장
	5	136.5			
	23	3,152.3	1-1	329.4	-
			1-2	329.4	-
			1-3	289.3	-
			2	220.5	-
			3	317.4	-
			4	238.3	-
			5	176.2	공동건축권장
			6	121.0	
			7	187.9	-
			8-1	268.3	-
			8-2	277.6	-
			8-3	397.0	-

나. 단독주택용지(A-2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대지면적은 230㎡이고 권장면적은 330㎡이상으로 한다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대지분할을 할 경우 1개필지가 획지계획에 의한 최소면적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삭 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2	1,318.5	3	660.9	-
			4	657.6	-
	6	3,959.5	1	165.3	-
			3	109.9	-
			4	711.4	-
			5	878.4	-
			6	1,085.0	2
			7-1	336.4	-
			7-2	336.4	-
			7-3	336.7	-
	28	1,797.4	3	395.1	-
			4	566.9	-
			5	835.4	-
	30	3,532.2	1	154.4	-
			2	772.5	-
			3	194.1	-
			4	195.2	-
			5	164.9	공동건축권장
			6	150.0	
			7	151.4	공동건축권장
			8	147.6	
			9	236.5	-
			10	174.1	-
			11	157.5	-
			12	251.8	-
			13	181.2	-
			14	130.0	공동건축권장
			15	150.8	
			16	146.0	공동건축권장
			17	174.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A-2	37	6,004.3	1	242.8	-
			2	182.6	-
			3	357.1	-
			4	298.8	-
			5	260.2	-
			6	269.0	-
			7	255.2	-
			8	1,100.2	3
			9	238.0	-
			10	328.5	-
			11	321.3	-
			12	390.4	-
			13	267.9	-
			14	273.3	-
			15	257.3	-
			16	280.1	-
			17	300.6	-
			18	381.0	-
	38	4,011.5	1-1	346.7	-
			1-2	409.4	-
			2	247.2	-
			3	356.3	-
			4	242.7	-
			5	488.4	-
			6	272.3	-
			7	237.4	-
			8	358.5	-
			9	637.6	-
			10	155.8	-
	39	3,079.3	1	1,222.0	-
			2	231.9	-
			3	477.4	-
			4	516.9	-
			5	313.6	-
			6	210.3	공동건축권장
7			107.2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2	40	1,806.6	1	287.6	-	40	1,806.6	1	287.6	-	
			2	183.0	-			2	183.0	-	
			3	232.7	-			3	232.7	-	
			4	238.6	-			4	238.6	-	
			5-1	601.3	-			5-1	601.3	-	
			5-2	263.4	-			5-2	263.4	-	
	41	3,211.7	1	201.4	-	41	3,211.7	1	201.4	-	
			2	197.3	-			2	197.3	-	
			3	188.6	-			3	188.6	-	
			4	258.8	-			4	258.8	-	
			5	155.5	-			5	155.5	-	
			6	210.6	-			6	210.6	-	
			6-1	176.7	-			6-1	176.7	-	
			6-2	235.5	-			6-2	235.5	-	
			6-3	199.5	-			6-3	199.5	-	
			6-4	199.4	-			6-4	199.4	-	
			7	298.3	-			7	298.3	-	
			9	312.2	-			9	312.2	-	
	10	207.2	-	10	207.2	-					
	11	267.2	-	11	267.2	-					
	12	103.5	-	12	103.5	-					
	43	689.7	6	689.7	-	43	689.7	6	689.7	-	
	44	4,072.2	1	208.6	-	44	4,072.2	1	208.6	-	
			2	179.3	-			2	179.3	-	
			3	136.4	-			3	136.4	-	
			4	134.4	-			4	134.4	-	
			5	195.1	-			5	195.1	-	
			13	214.3	-			13	214.3	-	
			14	183.7	-			14	183.7	-	
			16	244.2	-			16	244.2	-	
			17	168.0	-			17	168.0	-	
			18	184.9	-			18	184.9	-	
			19	147.5	공동건축권장			19	147.5	공동건축권장	
			20	150.1	공동건축권장			20	150.1	공동건축권장	
			21-1	600.5				21-1-1	263.8	-	
				21-1-2	336.7	-					
	21-2	327.4	-	21-2	327.4	-					
	22	659.6	-	22	659.6	-					
	23	338.2	-	23	338.2	-					

* 변경사유 : 획지 분할에 의한 획지면적 및 번호 변경

2. 공동주택용지

가. 공동주택용지(B-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대지면적은 다세대는 330㎡이상, 연립주택은 5,000㎡이상으로 한다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1	36	2,201.5	1	440.0	-	B-1	36	2,201.5	1	440.0	-
			2	284.2	-				2	284.2	-
			3	414.9	-				3	414.9	-
			4	501.0	-				4	501.0	-
			7	437.9	-				7	437.9	-
			8	123.5	-				8	123.5	-
	44	2,532.1	24	139.4	-	B-1	44	2,532.1	24	139.4	-
			36	209.1	공동건축권장				36	209.1	공동건축권장
			37	238.0	공동건축권장				37	238.0	공동건축권장
			38	594.7	-				38	594.7	-
			39	350.3	공동건축권장				39	350.3	공동건축권장
			40	472.2	공동건축권장				40	837.1	공동건축권장
			41	188.1	공동건축권장				43	163.5	공동건축권장
			42	176.8	공동건축권장						
43	163.5	공동건축권장									

나. 공동주택용지(B-2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 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B-2	7	16,488.4	1	5,096.4	공동건축권장
			2	3,648.4	공동건축지정
			3	1,110.3	
			4-1	3,067.9	
			4-2	682.3	
			5	1,852.9	
			6	338.0	
			8	692.2	공동건축권장
	27	9,331.0	1	9,331.0	-
	28	14,026.4	1	10,260.0	-
			2	3,766.4	-
	29	12,115.6	1	12,115.6	-
	42	4,802.8	1	4,802.8	-
	43	7,726.0	1	3,998.0	-
			2	591.9	-
			3	3,136.1	-
	49	883.0	3	883.0	-
	50	4,538.6	1	4,101.0	-
			3	437.6	-

다. 공동주택용지(B-3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p>○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삭 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3	44	11,483.1	6	1,348.4	-	B-3	44	11,483.1	6	1,348.4	-	
			44-1	705.7	-				44-1	705.7	-	
			44-2	1,096.7	-				44-2	1,096.7	-	
			45	470.6	-				45	470.6	-	
			46	1,270.2	-				46	1,270.2	-	
			47-1	1,818.9	-				47-1	1,818.9	-	
			47-2	401.9	-				47-2	401.9	-	
			25-1	287.9	공동건축지정				25-1	4,150.5	공동건축지정	
			25-2	287.8	공동건축지정							
			25-3	288.2	공동건축지정							
			25-4	287.9	공동건축지정							
			25-5	288.7	공동건축지정							
			25-6	287.9	공동건축지정							
			26	162.1	공동건축지정							
			27	309.8	공동건축지정							
			28	267.1	공동건축지정							
			29	297.6	공동건축지정							
			30	220.2	공동건축지정					30	220.2	공동건축지정
			31	187.2	공동건축지정							
			32	106.0	공동건축지정							
			33	303.7	공동건축지정							
34	531.4	공동건축지정										
35	257.2	공동건축지정										
46	4,488.2		2	3,146.1	공동건축지정	46	4,488.2		2	4,488.2		
			4	1,342.1	공동건축지정							

* 변경사유 : 공동주택용지 획지 합병에 의한 획지면적 및 번호 변경

라. 공동주택용지(B-4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B-4	2	11,434.5	2	11,434.5	-
	5	1,723.2	3	1,723.2	-
	6	12,017.2	2	12,017.2	-
	43	11,011.6	5	10,543.8	-
			7	467.8	-
	49	5,213.5	1	4,636.2	-
			4	577.3	-

다. 공동주택용지(B-5 용도) : 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B-5	8	31,049.3	1	565.6	공동건축지정
			2	680.6	
			3	2,716.3	
			4	446.5	
			5	816.9	
			6-1	744.2	
			6-2	744.2	
			7	865.2	
			8	3,051.0	
			9	2,519.1	
			10	178.4	
			11	192.1	
			12	553.0	
			13	161.5	
			14	3,002.1	
			15	1,375.0	
			16	569.3	
			17	515.4	
			18	2,995.8	
			19	750.9	
			20	576.6	
			21	336.0	
			22	249.8	
			23	195.0	
			24	854.8	
			25	1,343.6	
			26	350.7	
			27	253.2	
			28	230.1	
29	2,885.4				

3. 근린생활시설용지

가. 근린생활시설용지(C-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대지면적은 간선부 500㎡이상, 이면부는 330㎡이상으로 한다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대지분할을 할 경우 1개필지가 획지계획에 의한 최소면적에 만족하고 잔여획지가 최소면적의 80% 일 경우 대지분할을 할 수 있다. 	삭 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C-1	24	4,991.9	1-1	363.8	-
			1-2	670.1	-
			1-3	337.0	-
			2-1	607.6	-
			3	505.7	-
			4	1,218.9	2
			6	286.3	-
			7	551.6	-
			8	450.9	-
	26	3,060.4	1	143.6	공동건축권장
			2	247.6	
			3	356.3	공동건축권장
			4	181.7	
			5	204.4	공동건축권장
			6	242.6	
			7	170.2	
			8	138.3	공동건축권장
			9	564.2	
			10	476.0	-
			11	188.1	공동건축권장
			12	147.4	
	31	1,754.3	1	405.1	-
			2	231.3	공동건축권장
			3	320.7	
			4	164.1	
			5	175.4	공동건축권장
			6	118.9	
			7	338.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C-1	32	2,469.9	1	178.1	공동건축권장
			2	225.0	
			3	230.1	공동건축권장
			4	293.9	공동건축권장
			5	166.4	공동건축권장
			7	136.9	공동건축권장
			8	301.3	공동건축권장
			9	91.6	공동건축권장
			10	228.5	
			11	321.7	
			12	110.2	공동건축권장
			13	186.2	
			45	3,272.3	1
	47	3,289.4	1	831.3	-
			2	982.8	-
			3-1	359.4	-
			3-2	349.7	-
			3-3	766.2	-
	48	2,152.9	1	835.5	-
			2	501.2	-
3			261.6	-	
4			296.8	-	
5			257.8	-	

4. 상업용지

가. 상업용지(C-2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대지면적은 간선부 660㎡이상, 이면부는 500㎡이상으로 한다 ○ 기존건축물이 위치하는 대지의 규모가 최소규모에 미달하거나, 환지계획에서 최소규모 미달필지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분할가능 획지수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C-2	33	4,013.6	1	3,046.9	-	B-3	33	4,013.6	1	3,046.9	-
			2	234.6	공동건축권장				2	234.6	공동건축권장
			3	143.6	공동건축지정				3	143.6	
			4	141.2	공동건축지정				4	141.2	
			5	160.0	공동건축권장				5	160.0	
			6	287.3	공동건축권장				6	287.3	
	34	2,191.0	1	276.0	-	34	2,191.0	1	276.0	-	
			2	378.5	공동건축지정			2	378.5	공동건축권장	
			3	181.8	공동건축지정			3	181.8		
			4	204.3	공동건축권장			4	204.3		
			5	330.1	공동건축권장			5	330.1		
			6	132.4	공동건축권장			6	132.4		
			7	369.4	-			7	369.4		
			8	171.0	-			8	171.0		
			9	147.5	-			9	147.5		
	35	4,509.9	1	136.4	공동건축권장	35	4,509.9	1	136.4	공동건축권장	
			2	403.3	공동건축권장			2	403.3		
			3	469.3	공동건축권장			3	469.3		
			4	359.4	-			4	359.4	-	
			5	276.4	-			5	276.4	-	
			6	288.1	-			6	288.1	-	
			7	2,225.8	-			7	2,225.8	-	
			8	351.2	공동건축권장			8	351.2	공동건축권장	

5. 종교시설용지 : 변경없음

가. 종교집회장(D-2 용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2	16	2,508.6	1	1,683.5	-
			3	825.1	-
	23	572.9	9	572.9	-

6. 노유자사설용지 : 변경없음

가. 아동관련시설(D-3 용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3	20	1,202.9	5	386.7	공동건축지정
			12	586.8	
			13	229.4	
	36	697.3	5	399.5	공동건축권장
6			297.8		

7. 업무시설 : 변경없음

가. 공공업무시설(D-4 용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4	43	3,572.1	4	3,572.1	-

8. 사회복지시설 : 변경없음

가. 사회복지시설(D-5 용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분할가능 획 지 수
			위 치	면 적(㎡)	
D-5	8	331	30	331.0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

가. 단독주택용지(A-1 용도) : 변 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용지)	3, 4, 5(1~2-3, 4~11), 10, 11, 12, 13, 15, 16(2,4), 17, 18, 20(1~4, 6~11), 21, 22, 23(1~8)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단독주택용지)	3, 4, 5(1~2-3, 4~11), 10, 11, 12, 13, 15, 16(2,4), 17, 18, 20(1~4, 6-1 ~11), 21, 22, 23(1~8)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나. 단독주택용지(A-2 용도) : 변 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단독주택용지)	2(3~4), 6(1,3~7), 28(3~5), 30(1~17) 37(1~2,4~18), 38(1~11), 39(1~7), 40(1~5-2) 41(1~6,6-1~4, 7,9~12) 43(6),44(1~5, 13~14, 16~20, 21-1~2, 22~23)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단독주택용지)	2(3~4), 6(1,3~7), 28(3~5), 30(1~17) 37(1~2,4~18), 38(1~11), 39(1~7), 40(1~5-2) 41(1~6,6-1~4, 7,9~12) 43(6),44(1~5, 13~14, 16~20, 21-1-1~2 , 22~23)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 변경사유 : 획지 분할에 의한 획지번호 변경

2. 공동주택용지

가. 공동주택용지(B-1 용도) : 변 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지용지)	36(1~4, 7, 8) 44(24, 36~43)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다세대 : 200% 연 립 : 150% 이하	
		높 이	• 다세대 및 연립주택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다세대 평형 : 20평, 8가구 / 주차 : 8대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공동주택지용지)	36(1~4, 7, 8) 44(24, 36~40, 43)	용도	허용용도	•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다세대 : 200% 연 립 : 150% 이하	
		높 이	• 다세대 및 연립주택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 다세대 평형 : 20평, 8가구 / 주차 : 8대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유 : 획지 분할에 의한 획지번호 변경

나. 공동주택용지(B-2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2 (공동주택용지)	7(1~3,4-1~2, 5~6, 8), 27(1), 28(1~2), 29(1), 42(1), 43(1~3), 49(3), 50(1,3)	용도	허용용도	•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 B-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1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다. 공동주택용지(B-3 용도) : 변 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3 (공동주택용지)	44(6, 25~35, 44-1~2, 45~47), 46(2, 4)	용도	허용용도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 B-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3 (공동주택용지)	44(6, 25-1, 30, 44-1~2, 45~47), 46(2)	용도	허용용도	•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 B-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10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 변경사유 : 획지 합병에 의한 획지번호 변경

라. 공동주택용지(B-4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4 (공동주택용지)	2(2),5(3),6(2), 43(5,7),49(1,4)	용도	허용용도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 B-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 이하	
		용 적 륜	• 23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마. 공동주택용지(B-5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5 (공동주택용지)	8(1~29)	용도	허용용도	•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별표1 B-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23%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15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공동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공동주택용지	

3. 근린생활시설용지

가. 근린생활시설용지(C-1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근린생활 시설용지)	24,26,31,32,45, 47(3-1~3),48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 별표1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m 미만도로 150% 이하 • 15m 이상도로 350% 이하	
		높 이	• 15m 미만도로변 5층 이하 • 15m 이상도로변 7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준주거용지	
		배 치	• 별표2의 준주거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준주거용지			

4. 상업용지

가. 상업용지(C-2 용도) : 변 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2 (상업용지)	33,34,35	용도	허용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건 폐 율	• 70% 이하
		용 적 륜	• 25m 미만도로변 500% 이하 • 25m 이상도로변 800% 이하
		높 이	• 25m 미만도로변 7층 이하 • 25m 이상도로변 12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상업시설용지
		배 치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2 (상업용지)	33,34,35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타용도복합시 가능)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 분노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1층 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영업소 등)
		건 폐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 이하 	
		용 적 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 미만도로변 500% 이하 • 25m 이상도로변 80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 미만도로변 7층 이하 • 25m 이상도로변 12층 이하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3의 상업시설용지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6의 색채계획 	
건 축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표2의 상업시설용지 			

* 변경사유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명칭 변경
 1층 전면불량업종에 대하여 건축물 내부에 입지하는 경우에 대하여 완화

5. 학교용지

가. 학교용지(D-1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학교용지)	1.25(1,2)	용도	허용용도	기정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 용도 변경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 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5. 종교시설용지

가. 종교집회장(D-2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종교용지)	16(1,3),23(9)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20% 이하	
		높 이	• 2층 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 축 선	-			

6. 노유자시설

가. 아동관련시설(D-3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아동관련시설용지)	20가구 5, 12~13획지 36가구 5, 6획지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D-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D-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형 태	• 별표3의 단독주택용지	
		배 치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색 채	• 별표6의 색체계획	
건 축 선	• 별표2의 단독주택용지			

7. 공공청사

가. 공공업무시설(D-4 용도) : 변경

【 기 정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공공청사)	43가구 4획지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3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 변 경 】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4 (공공청사)	43가구 4획지	용도	허용용도	• 공공청사
			불허용도	• 별표1의 D-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15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8.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D-5 용도)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5 (사회복지시설)	8가구 30획지	용도	허용용도	•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별표1의 D-5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2000%이하	
		높 이	• 4층이하	
		형 태	—	
		배 치	—	
		색 채	—	
건축선	• 25m이상도로 : 3m (환경영향평가협의사항) • 15m미만도로 : 1m			

8. 기타사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사

【별표 1】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 기 정 】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종 일반 주거	단독 주택 용지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허용용도 : 단독주택 •1층허용용도 1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 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및 인천시건축조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 불허용도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정화구역에한함)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5층이하
제2종 일반 주거	공동 주택 용지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 다세대 (200) - 연립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 및 연립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 서 제외)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50	5층이하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00	10층이하
		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3	200	15층이하
제3종 일반 주거	"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30	15층이하
준 주 거	근린 생활 시설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 불허용도 •주택(주상복합제외) •판매 및 영업시설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아파트형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물·식물 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제외)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석유 가스충전소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60	150 (15m 미만 도로)	5층이하 (15m 미만 도로)
				350 (15m 이상 도로)	7층이하 (15m 이상 도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일반상업	상업 용지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상 불허용도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타용도복합시 가능) • 판매·영업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공공용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군사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세탁소,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 영업소 등)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 시업 등	70	500 (25m미만 도로)	7층이하 (20m미만 도로)
							800 (25m 이상 도로)	12층이하 (25m 이상 도로)
제2종 일반주거	학교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와 그 부속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50	5층이하
	종교 시설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집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	아동 관련 시설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유자 시설중 아동관련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	공공 청사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사회 복지 시설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 변경 】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제1종 일반 주거	단독 주택 용지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층허용용도 : 단독주택 •1층허용용도 1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 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건축법 및 인천시건축조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및 인천광역시도시계획 조례상 불허용도 •1·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사술소, 단란주점, 옥외골프연습장 등 주거환경 침해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주택(주상복합제외), 기숙사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5층이하	
제2종 일반 주거	공동 주택 용지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 다 세 대 (200) - 연립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 및 연립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을 층수에 서 제외) 	
		B-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50	5층이하	
		B-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00	10층이하	
		B-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23	200	15층이하	
제3종 일반 주거	"	B-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층 APT 및 부대복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30	15층이하	
준 주거	근린 생활 시설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주상복합제외)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 하는 장례식장은제외) •공장(인천시 건축조례 허용용도 제외)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동·식물 관련시설(식물관련시설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발전시설 •묘지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제한용도 (정화구역에 한함) 	60	150 (15m 미만 도로)	5층이하 (15m 미만 도로)	
				350 (15m 이상 도로)	7층이하 (15m 이상 도로)			

구 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율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불허용도			
일반상업	상업 용지	C-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 주거용이 9/10이하로 타용도복합시 가능)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 관련시설 • 동·식물 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묘지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1층전면 입면처리 불량업종 (건축자재,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제조업소, 수리점, 의약품, 도매점, 자동차영업소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관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 시업 등 ※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 	70	500 (25m미만 도로)	7층이하 (20m미만 도로)
							800 (25m 이상 도로)	12층이하 (25m 이상 도로)
제2종 일반주거	학교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와 그 부속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50	5층이하
	종교 시설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제1종 일반주거	아동 관련 시설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	공공 청사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4층이하
	사회 복지 시설	D-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 변경사유 :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허용용도 명칭 변경

4. 고시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고시도면과 같음 : 구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3 - 119호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고시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577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3. 12. 0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명 칭 : 도시관리계획(원당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2. 위 치 : 서구 원당동·당하동 일원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용도지역 및 지구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1) 도 로 : 변경

■ 도로 결정(변경) 총괄표

유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기정	129	20,783	234,053.0	16	5,410	68,964.5	50	7,931	78,321.4	63	7,442	86,767.1
	변경	129	20,783	234,052.9	16	5,410	68,964.5	50	7,931	78,321.3	63	7,442	86,767.1
광도	기정	1	1,030	40,645.2	-	-	-	-	-	-	1	1,030	40,645.2
중도	기정	10	5,327	82,418.4	4	2,545	40,630.8	2	1,007	19,576.5	4	1,775	22,211.1
소로	기정	118	14,426	110,989.4	12	2,865	28,333.7	48	6,924	58,744.9	58	4,637	23,910.8
	변경	118	14,426	110,989.3	12	2,865	28,333.7	48	6,924	58,744.8	58	4,637	23,910.8

■ 도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광로	3	23	40	주간선도로	1,030 (총 9,095)	동측 지구계	광로 3-25	일반 도로		1998. 6.12	
소계	3	1개노선		-	1,030	-	-	-			
중로	1	116	20	집 산 도로	228 (총 1,366)	광로 3-24	중로 1-120	일반 도로		1998. 6.12	
중로	1	120	20	보조간선도로	1,330 (총 4,290)	대로 2-61	대로 3-58	일반 도로		1998. 6.12	버스 베이 설치
중로	1	127	20	집 산 도로	488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1999. 6.23	
중로	1	128	20	집 산 도로	499	광로 3-23	중로 1-120	일반 도로		1999. 6.23	
소계	1	4개노선		-	2,545	-	-	-			

주) ()는 노선전체에 대한 사항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2	173	17	집 산 도로	462	중로 1-120	중로 1-127	일반 도로		1999. 6.23	
중로	2	174	17	집 산 도로	545	중로 1-120	중로 1-128	일반 도로		1999. 6.23	
소계	2	2개노선		-	1,007	-	-	-			
중로	3	107	12	집 산 도로	779	광로3-23	중로1-120	일반 도로		1999. 6.23	
중로	3	108	12	집 산 도로	322	중로 3-107	소로 3-38	일반 도로		1999. 6.23	
중로	3	111	12	집 산 도로	483	광로 3-23	중로2-174	일반 도로		1999. 6.23	
중로	3	112	12	집 산 도로	191	중로 1-120	소로 2-41	일반 도로		1999. 6.23	
소계	3	4개노선		-	1,775	-	-	-			
소로	1	1	10	국 지 도로	604	중로 1-116	중로 1-120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1	2	10	국 지 도로	421	중로 1-127	중로 1-127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1	3	10	국 지 도로	313	광로 3-23	중로 1-127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1	4	10	국 지 도로	357	중로 3-107	중로 3-108	일반 도로		2001. 8.30	
소로	1	5	10	국 지 도로	143	소로 1-4	소로 1-6	일반 도로		2001. 8.30	
소로	1	6	10	국 지 도로	116	중로 3-107	소로 1-4	일반 도로		2001. 8.30	
소로	1	7	10	국 지 도로	105	중로 1-120	중로 3-107	일반 도로		2001. 8.30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1	8	10	국 지 도 로	132	중로 3-108	소로 1-6	일반 도로		2001. 8.30	
소로	1	9	10	국 지 도 로	89	소로 1-8	소로 1-4	일반 도로		2001. 8.30	
소로	1	10	10	국 지 도 로	113	중로 3-108	소로 1-4	일반 도로		2001. 8.30	
소로	1	11	10	국 지 도 로	417	중로 1-128	중로 1-128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1	12	10	국 지 도 로	55	중로 1-128	소로 1-11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1	12개노선			2,865	-	-			-	
소로	2	1	8	국 지 도 로	158	중로 1-120	소로 1-1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2	8	국 지 도 로	353	소로 1-1	소로 2-1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3	8	국 지 도 로	27	중로1-120	소로3-4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	8	국 지 도 로	58	소로 1-1	- (원당동 656-21)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5	8	국 지 도 로	37	소로 2-1	소로 3-8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6	8	국 지 도 로	49	소로 2-1	소로 3-9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7	8	국 지 도 로	225	중로 2-173	- (원당동 790)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8	8	국 지 도 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9	8	국 지 도 로	92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0	8	국 지 도 로	93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1	8	국 지 도 로	102	소로 2-7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2	8	국 지 도 로	100	소로 2-11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3	8	국 지 도 로	289	소로 1-4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4	8	국 지 도 로	74	소로 2-13	소로 1-3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5	8	국 지 도 로	41	소로 1-3	소로2-17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6	8	국 지 도 로	120	소로 2-17	소로 2-17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17	8	국 지 도 로	315	소로 1-3	소로2-17	일반 도로		19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18	8	국지도로	609	소로 2-18	소로 2-18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19	8	국지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0	8	국지도로	35	중로 3-107	소로 2-18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1	8	국지도로	14	중로 3-107	동측 지구계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2	8	국지도로	190	중로 3-107	소로 1-8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3	8	국지도로	56	중로 3-107	소로 2-22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4	8	국지도로	49	소로 2-22	소로 3-32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5	8	국지도로	118	소로 1-4	소로 1-6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26	8	국지도로	82	소로 1-8	소로 1-4	일반도로		2001.8.30	
소로	2	27	8	국지도로	328	소로 1-8	소로 2-27	일반도로		2001.8.30	
소로	2	28	8	국지도로	55	소로 2-27	소로 2-27	일반도로		2001.8.30	
소로	2	29	8	국지도로	37	중로 3-107	소로 2-27	일반도로		2001.8.30	
소로	2	30	8	국지도로	8	중로 3-107	- (원당동 778-11)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1	8	국지도로	24	중로 3-107	- (원당동 778)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2	8	국지도로	9	중로 3-107	- (원당동 561)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3	8	국지도로	216	중로 3-107	소로 2-33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4	8	국지도로	4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5	8	국지도로	331	중로 3-111	소로 2-35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6	8	국지도로	368	중로 3-111	중로 3-111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7	8	국지도로	85	소로 2-38	소로 2-36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8	8	국지도로	103	소로 2-36	소로 2-36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39	8	국지도로	179	광로 3-23	소로 2-40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40	8	국지도로	134	중로 1-120	소로 2-39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41	8	국지도로	291	소로 2-47	- (당하동 984-2)	일반도로		1999.6.23	
소로	2	42	8	국지도로	195	중로 3-112	소로 2-48	일반도로		1999.6.23	

등급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2	43	8	국 지 도 로	26	소로 2-42	남측 지구계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4	8	국 지 도 로	90	소로 2-45	소로 2-41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5	8	국 지 도 로	204	소로 2-41	- (당하동 325)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6	8	국 지 도 로	161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7	8	국 지 도 로	174	소로 2-45	소로 2-48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8	8	국 지 도 로	463	소로 2-41	소로 2-47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2	48개노선		-	6,924	-	-	-			
소로	3	1	6	국 지 도 로	147	소로 2-1	소로 2-2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3	2	6	국 지 도 로	37	소로 1-1	소로 3-1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3	3	6	국 지 도 로	99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3	4	6	국 지 도 로	268	소로 2-2	소로 2-2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3	5	4	국 지 도 로	72	소로 2-2	소로 3-4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3	6	6	국 지 도 로	46	소로 1-1	소로 2-2	일반 도로		1999. 6.23	
소로	3	7	3	특 수 도 로	13	중로 1-116	소로 2-4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8	3	특 수 도 로	11	중로 1-116	소로 2-5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9	3	특 수 도 로	16	중로 1-116	소로 2-6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0	3	특 수 도 로	368	소로 1-1	소로 2-4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1	3	특 수 도 로	15	소로 1-1	소로 3-10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2	3	특 수 도 로	18	중로 1-1	소로 3-10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3	3	특 수 도 로	29	중로 1-120	소로 3-3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4	3	특 수 도 로	40	중로 1-120	소로 3-4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5	3	특 수 도 로	153	소로 1-1	소로 1-1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6	3	특 수 도 로	216	소로 1-1	중로 2-173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7	3	특 수 도 로	303	소로 2-7	소로 3-16	보 행 자 전용도로		19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18	3	특수도로	36	소로 2-13	소로2-13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19	3	특수도로	30	광로 3-23	소로 2-14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0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1	3	특수도로	7	광로 3-23	소로 2-17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2	3	특수도로	155	중로 1-127	중로 2-173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3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4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5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6	2	특수도로	295	소로 2-21	북측 지구계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7	3	특수도로	40	소로 2-18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8	3	특수도로	36	소로 3-27	소로 3-26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29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18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30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31	3	특수도로	20	중로 1-120	소로 2-22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32	3	특수도로	16	중로 3-107	소로 2-24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33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5	보행자 전용도로		2001. 8.30	
소로	3	34	3	특수도로	33	소로 1-5	소로 2-25	보행자 전용도로		2001. 8.30	
소로	3	35	3	특수도로	26	중로 3-107	소로 1-8	보행자 전용도로		2001. 8.30	
소로	3	36	3	특수도로	43	중로 3-107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2001. 8.30	
소로	3	37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27	보행자 전용도로		2001. 8.30	
소로	3	38	3	특수도로	580	중로 3-107	중로 3-108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39	6	특수도로	30	중로 3-107	- (원당동 566)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소로	3	40	6	특수도로	15	중로 1-120	- (원당동 568-6)	보행자 전용도로		1999. 6.23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소로	3	41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원당동 565)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2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원당동 562)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3	3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2-33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4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소로 2-35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5	3	특수도로	10	광로 3-23	- (당하동 13-2)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6	4	특수도로	201	중로 1-128	중로 3-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7	3	특수도로	229	소로 2-35	소로 2-36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8	3	특수도로	18	소로 2-36	소로 3-47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49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0	4	특수도로	32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1	4	특수도로	35	광로 3-23	소로 1-11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2	4	특수도로	229	중로 1-128	중로 2-174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3	3	특수도로	23	중로 1-120	소로 2-39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4	3	특수도로	170	소로 2-40	소로 2-41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5	3	특수도로	57	중로 3-112	소로 2-42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6	3	특수도로	33	소로 2-48	소로 2-46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7	3	특수도로	34	소로 2-48	소로 2-47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8	4	특수도로	55	중로 1-127	소로 1-2	보행자 전용도로		1999.6.23	
소로	3	58개노선		-	4,637	-	-	-			

2) 주차장 :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5,638.1	-	
기정	1	주차장	원당동825-1	1,409.5	1999.6.23	
기정	2	주차장	원당동825-8	1,409.1	1999.6.23	
기정	3	주차장	당하동1029-1	1,411.3	1999.6.23	
기정	4	주차장	당하동1030-6	1,408.2	1999.6.23	

3) 공 원 : 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44,932.5	-	
기정	1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11-2	18,321.3	1999.6.23	
기정	2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24-11	10,226.9	1999.6.23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원당동 849	11,114.7	2001.8.30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원당동 805-3	2,949.5	1999.6.23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당하동 1041	2,320.1	2000.6.26	

4) 녹 지 : 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13,933.1	-	
소계	-	-	-	-	9,162.4	-	완충녹지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11-9	388.2	1999.6.23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2	418.0	1999.6.23	
기정	3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3	1147.2	1999.6.23	
기정	4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20-4	106.0	1999.6.23	
기정	5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19-1	913.6	1999.6.23	
기정	6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1	928.5	1999.6.23	
기정	7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27-2	838.9	1999.6.23	
기정	8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1	374.8	1999.6.23	
기정	9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10	801.1	1999.6.23	
기정	10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54-9	942.4	1999.6.23	
기정	11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55-3	170.3	1999.6.23	
기정	12	녹 지	완충녹지	원당동 858	539.0	1999.6.23	
기정	13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3-6	675.4	1999.6.23	
기정	14	녹 지	완충녹지	당하동 1035	919.0	1999.6.23	
소계	-	-	-	-	4,770.7	-	경관녹지
기정	15	녹 지	경관녹지	원당동 795-1	114.7	1999.6.23	
기정	16	녹 지	경관녹지	원당동 801	1,196.9	1999.6.23	
기정	17	녹 지	경관녹지	원당동 840-6	986.6	1999.6.23	
기정	18	녹 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13	298.1	1999.6.23	
기정	19	녹 지	경관녹지	원당동 854-6	107.7	1999.6.23	
기정	20	녹 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6-2	207.1	2000.6.26	
기정	21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2	479.7	2010.10.4	
기정	22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87-1	98.2	2010.10.4	
기정	23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3-5	523.0	2010.10.4	
기정	24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57-1	111.3	2010.10.4	
기정	25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5	59.2	2010.10.4	
기정	26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37-6	143.0	2010.10.4	
기정	27	녹지	경관녹지	당하동 1061-1	142.0	2010.10.4	
기정	28	녹지	경관녹지	원당동 810-14	303.2	2010.10.4	

5) 학 교 : 변경없음

■ 학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57,715.8	-	
기정	1	학 교	고등학교	원당동 852-3	12,053.0	1999.6.23	
기정	2	학 교	중학교	원당동 852-2	11,419.5	1999.6.23	
기정	3	학 교	초등학교	원당동 809	12,215.1	1999.6.23	
기정	4	학 교	초등학교	당하동 1022	11,247.3	1999.6.23	
기정	5	학 교	초등학교	당하동 1038-1	10,780.9	2000.6.26	

6) 공공청사 : 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	5,368.6	-	
기정	1	공공청사	동사무소	원당동 853-1	1,990.1	1999.6.23	
기정	2	공공청사	우체국	원당동 823-2번지	1,264.9	1999.6.23	
기정	3	공공청사	파 출 소	원당동 854-1	970.3	1999.6.23	
기정	4	공공청사	소방파출소	원당동 854-2	1,143.3	1999.6.23	

7) 하 천

■ 하천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 설 의 세 분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하천	하천	원당동 851-4	5,150.3	1999.6.23	

8)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계	-	-	-	1,436.9	2010.10.4	
기정	1	공공공지	원당동 873	884.7	2010.10.4	
기정	2	공공공지	원당동 836-4	379.1	2010.10.4	
기정	3	공공공지	원당동 849-1	119.8	2010.10.4	
기정	4	공공공지	원당동 857-2	53.3	2010.10.4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A-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1	1-1	615.7	1	387.5		A-1	1-1	615.7	1	387.5	
			2	228.2					2	228.2	
	2	893.4	1	316.4			2	893.4	1	316.4	
			2-1	270.2					2-1	270.2	
			2-2	306.8					2-2	306.8	
	3	2,215.2	1	369.2			3	2,215.2	1	369.2	
			1-2	369.2					1-2	369.2	
			1-3	369.2					1-3	369.2	
			1-4	369.2					1-4	369.2	
			1-5	369.2					1-5	369.2	
			1-6	369.2					1-6	369.2	
	4	2,079.9	1	905.4	2획지로 분할		4	2,079.9	1	905.4	2획지로 분할
			2	1,174.5	4획지로 분할				2	1,174.5	4획지로 분할
	9	5,198.9	1	485.9			9	5,198.9	1	485.9	
			2	1,262.8	3획지로 분할				2	1,262.8	3획지로 분할
			3-1	298.1					3-1	298.1	
			3-2	299.5					3-2	299.5	
			3-3	298.2					3-3	298.2	
			3-4	299.7					3-4	299.7	
			4	1,775.1	6획지로 분할				4	1,775.1	6획지로 분할
	10	4,312.3	1-1	922.8	3획지로 분할		10	4,312.3	1-1	922.8	3획지로 분할
			1-2	664.0	2획지로 분할				1-2	664.0	2획지로 분할
			2-1	340.5					2-1	340.5	
			2-2	340.5					2-2	340.5	
			3	381.4					3	381.4	
			4-1	275.7					4-1	275.7	
			4-2	310.9					4-2	310.9	
			5	677.0	2획지로 분할				5	677.0	2획지로 분할
	11	2,521.8	1	1,629.3	5획지로 분할		11	2,521.8	1	1,629.3	5획지로 분할
			2	447.8					2	447.8	
			3	444.7					3	444.7	
	14	2,138.9	1	605.3	2획지로 분할		14	2,138.9	1	605.3	2획지로 분할
			2	306.1					2	306.1	
			3	347.3					3	347.3	
			4	291.5					4	291.5	
			5	182.1					5	182.1	
			6	406.6					6	406.6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15	3,058.0	1	595.9		A-1	15	3,058.0	1	595.9		
			2	1196.9	2획지로 분할				2	1196.9	2획지로 분할	
			3	432.3					3	432.3		
			4-1	277.5					4-1	277.5		
			4-2	277.6					4-2	277.6		
			4-3	277.8					4-3	277.8		
	21	5,284.4	5,282.4	1	389.3		21	5,282.4	5,282.4	1	389.3	
				2	389.6					2	389.6	
				3-1	349.8					3-1	349.8	
				3-2	656.6					3-2	656.6	
				3-3	570.0	2획지로 분할				3-3	570.0	2획지로 분할
				4	612.5	2획지로 분할				4	612.5	2획지로 분할
				5	566.1	2획지로 분할				5	566.1	2획지로 분할
				6	335.5					6	335.5	
				7-1	352.5					7-1	352.5	
				7-2	330.8					7-2	330.8	
				7-3	330.6					7-3	330.6	
				8	399.1					8	399.1	
	22	2,136.8	2,138.6	1	369.4		22	2,138.6	2,138.6	1	369.4	
				2	470.1	2획지로 분할				2	470.1	2획지로 분할
				3	692.8	3획지로 분할				3	692.8	3획지로 분할
				4	288.3					4	288.3	
				5	318.0					5	318.0	
	23-1	1,271.7	1,271.7	1	674.6	2획지로 분할	23-1	1,271.7	1,271.7	1	674.6	2획지로 분할
				2	597.1	2획지로 분할				2	597.1	2획지로 분할
	23-2	1,287.4	1,287.4	4-1	415.0		23-2	1,287.4	1,287.4	4-1	415.0	
				4-2	397.8					4-2	397.8	
				4-3	474.6					4-3	474.6	
	27	5,560.6	5,560.6	1	603.6	2획지로 분할	27	5,560.6	5,560.6	1	603.6	2획지로 분할
				2	412.4					2	412.4	
3-1				387.8		3-1				387.8		
3-2				379.7		3-2				379.7		
3-3				379.7		3-3				379.7		
3-4-1				324.8		3-4-1				324.8		
3-4-2				324.7		3-4-2				324.7		
3-4-3				324.7		3-4-3				324.7		
3-4-4				334.0		3-4-4				334.0		
3-4-5				334.0		3-4-5				334.0		
3-4-6				334.1		3-4-6				334.1		
4				198.1		4				198.1		
5				549.4		5				549.4		
6-1				231.2		6-1				231.2		
6-2				442.4		6-2				442.4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54-1	1,483.3	1-1	317.6	3획지로 분할	A-1	54-1	1,483.3	1-1	317.6	3획지로 분할	
			1-2	741.6					1-2	741.6		
1-3			424.1	1-3		424.1						
	54-2	1,258.5	3-1	282.0			54-2	1,258.5	3-1	282.0		
			3-2	231.5					3-2	231.5		
			3-3	231.4					3-3	231.4		
			3-4	231.5					3-4	231.5		
			3-5	282.1					3-5	282.1		
	55	2,327.8	1	579.2	2획지로 분할		55	2,327.8	1	579.2	2획지로 분할	
			1-2-1	525.4					1-2-1	525.4		
			1-2-2	1,223.2					1-2-2	305.8		
									1-2-3	305.8		
								1-2-4	305.8			
								1-2-5	305.8			
	56	1,854.3	1	303.8			56	1,854.3	1	303.8		
			2-1	311.6					2-1	311.6		
			2-2	311.6					2-2	311.6		
			3-1	308.3					3-1	308.3		
			3-2	308.9					3-2	308.9		
		3-3	310.1	3-3	310.1							
	57	1,276.3	1	811.5	4획지로 분할		57	1,276.3	1	811.5	4획지로 분할	
			2	464.8					2	464.8		2획지로 분할
	58-1	769.9	1	769.9	2획지로 분할		58-1	769.9	1	769.9	2획지로 분할	
	59	3,508.0	1-1	291.8			59	3,508.0	1-1	291.8		
			1-2	291.8					1-2	291.8		
			2-1	253.3					2-1	253.3		
			2-2	258.4					2-2	258.4		
			2-3	297.5					2-3	297.5		
			2-4	301.6					2-4	301.6		
			2-5	304.7					2-5	304.7		
			2-6	300.5					2-6	300.5		
			2-7	304.6					2-7	304.6		
			2-8	304.7					2-8	304.7		
			2-9	301.6					2-9	301.6		
2-10	297.5	2-10	297.5									
	60	3,314.7	1-1-1	247.7			60	3,314.7	1-1-1	247.7		
			1-1-2	247.7					1-1-2	247.7		
			1-2	495.4					1-2	495.4		2획지로 분할
			2-1-1	267.1					2-1-1	267.1		
			2-1-2	304.3					2-1-2	304.3		
			2-1-3	300.3					2-1-3	300.3		
			2-1-4	290.2					2-1-4	290.2		
			2-2	774.5					2-2	774.5		3획지로 분할
2-3	387.5	2-3	387.5									
	61	3,426.0	1	3,426.0	13획지 분할		61	3,426.0	1-1	1,156.0	4획지 분할	
									1-2	2,270.0	8획지 분할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62	2,098.9	1-1	561.5	2획지로 분할	A-1	62	2,099.8	1-1	561.5	2획지로 분할
			1-2	568.3	2획지로 분할				1-2-1	294.5	
									1-2-2	273.8	
			2-1-2	299.9					2-1-2	299.9	
			2-2	359.9					2-2	359.9	
				2-3	310.2						
	64	2,860.9	1	2,504.1	8획지로 분할	64	2,860.9	1	2,504.1	8획지로 분할	
			2	356.8				2	356.8		
	65-1	815.0	1	815.0	3획지로 분할	65-1	815.0	1	815.0	3획지로 분할	
	66	5,102.2	1-1	370.0		66	5,102.2	1-1	370.0		
			1-2	422.2				1-2	422.2		
			1-3	420.6				1-3	420.6		
			1-4	358.9				1-4	358.9		
			1-5	356.5				1-5	356.5		
			1-6	354.2				1-6	354.2		
			1-7	356.2				1-7	356.2		
			1-8	385.7				1-8	385.7		
			2-1	1,731.1	5획지로 분할			2-1	1,731.1	5획지로 분할	
			2-2	346.8				2-2	346.8		
	67	4,750.9	1-1	317.7		67	4,750.9	1-1	317.7		
			1-2	317.8				1-2	317.8		
			1-3	317.8				1-3	317.8		
			1-4	317.8				1-4	317.8		
			1-5	317.7				1-5	317.7		
			1-6	317.8				1-6	317.8		
			1-7	317.8				1-7	317.8		
			1-8	317.4				1-8	317.4		
2-1			330.6		2-1			330.6			
2-2			309.6		2-2			309.6			
2-3			309.6		2-3			309.6			
2-4			309.5		2-4			309.5			
2-5			309.6		2-5			309.6			
2-6			309.6		2-6			309.6			
2-7	330.6		2-7	330.6							
79-2	1,589.6	2	868.8	2획지로 분할	79-2	1,589.6	2	868.8	2획지로 분할		
		3	338.7				3	338.7			
		4	382.1				4	382.1			
81-1	1,900.7	1	814.9	3획지로 분할	81-1	1,907.0	1	814.9	3획지로 분할		
		2	1,092.1	3획지로 분할			2-1	298.1			
							2-2	298.1			
							2-3	495.9			
82	1,500.0	1-1	305.6		82	1,500.0	1-1	305.6			
		1-2	274.7				1-2	274.7			
		1-3	338.0				1-3	338.0			
		1-4	289.9				1-4	289.9			
		1-5	291.8				1-5	291.8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1	83	1,082.4	1	1,082.4	2획지로 분할	A-1	83	1,082.4	1	1,082.4	2획지로 분할
	86	3,574.6	1	802.4	2획지로 분할		86	3,574.6	1	802.4	2획지로 분할
2-1			371.3		2-1	371.3					
2-2			296.5		2-2	296.5					
2-3-1			334.1		2-3-1	334.1					
2-3-2			334.9		2-3-2	334.9					
3-1			356.0		3-1	356.0					
3-2			356.8		3-2	356.8					
3-3			362.4		3-3	362.4					
3-4			360.2		3-4	360.2					
89	1,749.3	1-1	295.4		89	1,749.3	1-1	295.4			
		1-2	290.6				1-2	290.6			
		1-3	290.6				1-3	290.6			
		1-4	290.7				1-4	290.7			
		1-5	290.6				1-5	290.6			
		1-6	291.4				1-6	291.4			
90	2,630.4	1	2,630.4	9획지로 분할	90	2,630.4	1	2,630.4	9획지로 분할		
91	4,070.9	1	4,070.9	13획지로 분할	91	4,070.9	1	4,070.9	13획지로 분할		
92	4,263.4	1	4,263.4	13획지로 분할	92	4,263.4	1-1	243.3			
							1-2	312.9			
							1-3	312.9			
							1-4	312.9			
							1-5	313.1			
							1-6	313.1			
							1-7	313.1			
							1-8	268.0			
							1-9	290.2			
							1-10	340.1			
							1-11	294.1			
							1-12	313.9			
							1-13	314.9			
							1-14	320.9			

2. 단독주택용지(A-2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2	5	2,348.8	1	219.5		A-2	5	2,348.8	1	219.5	
			2-1	663.8					2-1	663.8	
			2-2	562.4					2-2	562.4	
			3	639.7					3	639.7	
			4	263.4					4	263.4	
	24	2,744.7	1-1	169.9		24	2,744.7	1-1	169.9		
			1-2	396.7				1-2	396.7		
			1-3	383.3				1-3	383.3		
			2	832.9	3획지로 분할			2	832.9	3획지로 분할	
			3-1	455.4				3-1	455.4		
			3-2	506.5	2획지로 분할			3-2	506.5	2획지로 분할	
	63	3,526.9	1-1	1,182.7	4획지로 분할	63	3,526.9	1-1	1,182.7	4획지로 분할	
			2	1,186.5	5획지로 분할			2	1,186.5	5획지로 분할	
			3-1	374.3				3-1	374.3		
			3-2	231.4				3-2	231.4		
			4	552.0	2획지로 분할			4-1	261.0		
	68-1	1,748.2	1	385.9		68-1	1,748.2	1	385.9		
			2	423.0				2	423.0		
			3-2	335.7				3-2	335.7		
			4-1	301.9				4-1	301.9		
			4-2	301.7				4-2	301.7		
	77-1	4,438.9	1	292.0		77-1	4,438.9	1	292.0		
			2	3,065.8	5획지로 분할			2	3,065.8	5획지로 분할	
			3	1,081.1	2획지로 분할			3-1	541.1		
	80-2	643.6	10	643.6	2획지로 분할	80-2	643.6	10	643.6	2획지로 분할	
3-2			540.0								
85-1	881.5	2	881.5	3획지로 분할	85-1	881.5	2	881.5	3획지로 분할		
87	2,658.8	1-1	346.7		87	2,658.8	1-1	346.7			
		1-2	330.5				1-2	330.5			
		1-3	330.6				1-3	330.6			
		1-4	346.8				1-4	346.8			
		2	309.7				2	309.7			
		3	296.3				3	296.3			
		4-1	368.2				4-1	368.2			
		4-2	330.0				4-2	330.0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2	103-1	1,794.7	1-1	330.0		A-2	103-1	1,794.7	1	660.0	
			1-2	330.0							
			2	1,134.7	4획지로 분할				2	1,134.7	4획지로 분할
	104	1,456.0	1	663.3	2획지로 분할	104	1,456.0	1	663.3	2획지로 분할	
			2	792.7	3획지로 분할			2	792.7	3획지로 분할	
	105	2,018.6	1	344.9		105	2,018.6	1	344.9		
			2	302.3				2	302.3		
			3	540.1	2획지로 분할			3	540.1	2획지로 분할	
			4	831.3	4획지로 분할			4	831.3	4획지로 분할	
	107-1	664.8	1	664.8		107-1	664.8	1	664.8		
	108-2	1,113.7	1	280.4		108-2	1,113.7	1	280.4		
			2	833.3	3획지로 분할			2	833.3	3획지로 분할	

3. 단독주택용지(A-3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3	7	3,333.2	1	1,354.5	4획지로 분할	A-3	7	3,332.3	1-1	347.0					
				1-2					346.9						
			1-3	330.4											
			1-4	330.3											
			2-1	362.2											
			2-2	346.5											
			2-3	258.6											
	8-1	3,063.0	3,063.0	3-1	350.6					8-1	3,063.0	3,063.0	3-1	350.6	
				3-2	659.8				2획지로 분할				3-2	659.8	2획지로 분할
				1	905.3				2획지로 분할				1	905.3	2획지로 분할
				2	660.7				2획지로 분할				2	660.7	2획지로 분할
				3	521.8								3	521.8	
	12	2,888.3	2,888.3	4	203.0					12	2,888.3	2,888.3	4	203.0	
				5	772.2				2획지로 분할				5	772.2	2획지로 분할
				1	660.4				2획지로 분할				1	660.4	2획지로 분할
				2	638.7				2획지로 분할				2	638.7	2획지로 분할
				3	467.8								3	467.8	
	13	1,296.3	1,296.3	4-1	330.7					13	1,296.3	1,296.3	4-1	330.7	
				4-2	330.7								4-2	330.7	
				4-3	460.0								4-3	460.0	
				1	158.8								1	158.8	
	16	3,824.4	3,824.4	2	227.2					16	3,824.4	3,824.4	2	227.2	
				3	910.3				2획지로 분할				3	910.3	2획지로 분할
				1	795.9				3획지로 분할				1	795.9	3획지로 분할
2				592.9	2획지로 분할	2	592.9	2획지로 분할							
3				314.1		3	314.1								
4				734.7	2획지로 분할	4	734.7	2획지로 분할							
5-1				832.1	3획지로 분할	5-1	832.1	3획지로 분할							
17-1	5,298.3	5,298.3	5-2	277.4		17-1	5,298.3	5,298.3	5-2	277.4					
			5-3	277.3					5-3	277.3					
			1	1,108.5	3획지로 분할				1	1,108.5	3획지로 분할				
			2	239.9					2	239.9					
			3-1	304.2					3-1	304.2					
			3-2	330.6					3-2	330.6					
			3-3	663.3	2획지로 분할				3-3	663.3	2획지로 분할				
30	1,519.7	1,519.7	4	1,142.0	3획지로 분할	30	1,519.7	1,519.7	4	1,142.0	3획지로 분할				
			5	715.8	3획지로 분할				5	715.8	3획지로 분할				
			6	794.0	3획지로 분할				6	794.0	3획지로 분할				
			1	589.6	2획지로 분할				1	589.6	2획지로 분할				
			2-1	304.5					2-1	304.5					
			2-2	625.6	2획지로 분할				2-2	625.6	2획지로 분할				
			31	1,116.4	1,116.4				1-1	279.0		31	1,116.4	1,116.4	1-1
1-2	279.1					1-2	279.1								
1-3	279.1					1-3	279.1								
1-4	279.2					1-4	279.2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3	32	3,141.7	1	1,718.5	6획지로 분할	A-3	32	3,141.7	1-1	257.7	
									1-2	257.8	
				1-3	280.0						
				1-4	661.0		2획지로 분할				
			1-5	262.0							
			2	1,423.2	5획지로 분할				2	1,423.2	5획지로 분할
33	1,949.7		1	1,551.1	5획지로 분할	33	1,949.7		1	1,551.1	5획지로 분할
									2	231.9	
									3	166.7	
34	2,243.5		1	1,298.5	4획지로 분할	34	2,243.5		1	1,298.5	4획지로 분할
									2-1	688.1	
									2-2	256.9	
35-1	1,104.3		1	699.1	2획지로 분할	35-1	1,104.3		1	699.1	2획지로 분할
									2	405.2	
36-1	1,366.5		1	1,102.7	4획지로 분할	36-1	1,366.5		1	1,102.7	4획지로 분할
									2	263.8	
37-1	1,486.2		1	336.4		37-1	1,486.2		1	336.4	
									2	646.9	2획지로 분할
									3	502.9	2획지로 분할
38	2,020.7		1-1	336.5		38	2,020.7		1-1	336.5	
									1-2	336.4	
									1-3	495.3	2획지로 분할
									2	852.5	3획지로 분할
39	2,210.2		1	193.4		39	2,210.2		1	193.4	
									2	429.0	
									3	176.8	
									4	658.6	2획지로 분할
									5	752.4	2획지로 분할
						5-2	376.2				
40	3,274.6		1	2,228.7	9획지로 분할	40	3,274.6		1	2,228.7	9획지로 분할
									2-1	550.0	2획지로 분할
			2	1,045.9	4획지로 분할				2-2	495.9	2획지로 분할
42	4,256.2		1	705.4	2획지로 분할	42	4,256.5		1	705.4	2획지로 분할
									2	878.4	2획지로 분할
									3	1,017.0	3획지로 분할
									4	779.2	2획지로 분할
									5-1	397.0	
									5-2	285.8	
									6	193.7	
43	1,626.9		1-1	267.1		43	1,626.9		1-1	267.1	
									1-2	234.6	
									1-3	273.9	
									1-4	572.0	2획지로 분할
									1-5	279.3	
44	2,134.3		1-1	337.1	2획지로 분할	44	2,134.3		1-1	337.1	2획지로 분할
									1-2	337.0	
									2-1	431.8	
									2-2	297.6	
									2-3	730.8	2획지로 분할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A-3	47-1	1,658.7	1	1,025.7	4획지로 분할	A-3	47-1	1,658.7	1-1	256.7			
									1-2	256.4			
										1-3	256.3		
										1-4	256.3		
				2	633.0		2획지로 분할			2	633.0	2획지로 분할	
	49	2,890.8	1	1,370.6	4획지로 분할			49	2,890.8	1-1	567.0	2획지로 분할	
											1-2	603.6	2획지로 분할
											1-3	200.0	
											2	377.4	
											3-1	942.0	2획지로 분할
				3-2	200.8								
	50	3,162.7	1	438.1	2획지로 분할			50	3,162.7	1	438.1	2획지로 분할	
											2	211.1	
											3	368.5	
											4	533.0	2획지로 분할
											5	386.6	
											6	633.4	2획지로 분할
											7	353.4	
											8	238.6	
	52	2,769.0	1	1,907.7	6획지로 분할			52	2,769.0	1	1,907.7	6획지로 분할	
2						861.3					3획지로 분할		

4. 단독주택용지(A-4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A-4	6	2,107.7	1	406.8		A-4	6	2,107.7	1	406.8	
			2	953.9	2획지로 분할				2	953.9	2획지로 분할
			3	747.0	2획지로 분할				3	747.0	2획지로 분할
	25	1,810.2	1	572.5	2획지로 분할	25	1,810.2	1	572.5	2획지로 분할	
			2	572.5	2획지로 분할			2	572.5	2획지로 분할	
			3	665.2	2획지로 분할			3	665.2	2획지로 분할	
	29	2,625.8	1-1	1,062.6	2획지로 분할	29	2,625.8	1-1-1	531.3		
				1,062.3	4획지로 분할			1-1-2	531.3		
			2	500.9				1-2-1	531.2	2획지로 분할	
								1-2-2	531.1	2획지로 분할	
	45	1,830.2	1-1-1-1	279.8		45	1,830.2	1-1-1-1	279.8		
				296.9					1-1-1-2	296.9	
				306.0					1-1-1-3	306.0	
			1-1-2	572.3	2획지로 분할			1-1-2	572.3	2획지로 분할	
			1-2	375.2				1-2	375.2		
	46-1	2,448.1	1	248.8		46-1	2,448.1	1	248.8		
				514.5	2획지로 분할				2	514.5	2획지로 분할
			3-1	247.4				3-1	247.4		
				297.5					3-2	297.5	
			3-3	200.0				3-3	200.0		
			4-1-1	235.0				4-1-1	235.0		
			4-1-2	235.0				4-1-2	235.0		
	4-2	469.9		4-2	469.9						
	48-1	987.5	1	987.5	3획지로 분할	48-1	987.5	1	987.5	3획지로 분할	
51	3,428.4	1-1	519.4	2획지로 분할	51	3,428.4	1-1	519.4	2획지로 분할		
			519.5	2획지로 분할				1-2	519.5	2획지로 분할	
		2	764.7	2획지로 분할			2	764.7	2획지로 분할		
		3-1-1	220.4				3-1-1	220.4			
		3-1-2	220.3				3-1-2	220.3			
		3-1-3	213.0				3-1-3	213.0			
		3-2	326.5				3-2	326.5			
		3-3	326.6				3-3	326.6			
		3-4	318.0				3-4	318.0			

5. 다세대/연립주택용지(B-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B-1	19	2,499.4	1-1	701.1		B-1	19	2,499.4	1-1	701.1	
			1-2	718.6					1-2	718.6	
			1-3	705.7					1-3	705.7	
			2	374.0					2	374.0	
	20	2,986.3	1-1	807.2		20	2,986.3	1-1	807.2		
			1-2	851.9				1-2	851.9		
			2	1,327.2				2	1,327.2		
	26	1,919.8	1	1,438.9		26	1,919.8	1-1	735.3		
								1-2	703.6		
			2	129.5				2	129.5		
			3	351.4				3	351.4		
	109-2	1,646.9	2-1	338.5		109-2	1,646.9	2-1	338.5		
			2-2	338.7				2-2	338.7		
			2-3	338.7				2-3	338.7		
			2-4	366.8				2-4	366.8		
			3	264.2				3	264.2		
	110	3,682.2	1-1-1	758.0		110	3,682.2	1-1-1	758.0		
			1-1-2	785.5				1-1-2	785.5		
			1-2	561.2				1-2	561.2		
			2-1	350.1				2-1	350.1		
			2-2	361.3				2-2	361.3		
			2-3	432.2				2-3	432.2		
			2-4	433.9				2-4	433.9		
	111	3,319.4	1	296.9		111	3,319.4	1	296.9		
2			272.4		2			272.4			
3			1,023.6		3			1,023.6			
4-1			379.2		4-1			379.2			
4-2			349.7		4-2			349.7			
4-3			360.7		4-3			360.7			
5-1			318.5		5-1			318.5			
5-2			318.4		5-2			318.4			
112	1,540.9	1-1	394.5		112	1,540.9	1-1	394.5			
		1-2	376.1				1-2	376.1			
		1-3	376.2				1-3	376.2			
		1-4	394.1				1-4	394.1			
114	3,186.1	1	729.6		114	3,186.1	1	729.6			
		2	688.9				2	688.9			
		3	537.2				3	537.2			
		4	432.7				4	432.7			
		5	797.7	2획지로 분할			5	797.7	2획지로 분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기 정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 호	면 적 (㎡)	변 경			비 고
			획 지		면 적(㎡)					획 지		면 적(㎡)	
			위 치							위 치			
B-1	115	2,398.4	1-1-1		406.9		B-1	115	2,398.4	1-1-1		406.9	
			1-1-2		515.9					1-1-2		515.9	
			2-1		595.3					2-1		595.3	
			2-2		331.3					2-2		880.3	
			2-3		549.0								
116	4,696.2	1-1		371.2		116	4,696.2	1-1		371.2			
		1-2		382.1				1-2		382.1			
		1-3		342.8				1-3		342.8			
		1-4		361.2				1-4		361.2			
		2-1		479.2	2획지로 분할			2-1		479.2	2획지로 분할		
		2-2		479.1	2획지로 분할			2-2		479.1	2획지로 분할		
		3		395.5				3		395.5			
		4-1		337.7				4-1		337.7			
		4-2		405.5				4-2		405.5			
		5-1		383.1				5-1		383.1			
		5-2		374.7				5-2		374.7			
		5-3		384.1				5-3		384.1			
		117	3,483.0	1				780.6	2획지로 분할	117	3,483.0	1	
2				711.9	2획지로 분할	2		711.9	2획지로 분할				
3				630.8	2획지로 분할	3		630.8	2획지로 분할				
4-1				345.6		4-1		345.6					
4-2				333.4		4-2		333.4					
4-3				346.8		4-3		346.8					
4-4				333.9		4-4		333.9					
118	3,836.8	1-1		393.0		118	3,836.8	1-1		393.0			
		1-2		392.9				1-2		392.9			
		1-3		392.9				1-3		392.9			
		2-1		660.6				2-1		660.6			
		2-2		653.5				2-2		653.5			
		3-1-1		330.3				3-1-1		330.3			
		3-1-2		332.0				3-1-2		332.0			
		3-2-1		341.1				3-2-1		341.1			
		3-2-2		340.5				3-2-2		340.5			
		119	3,328.3	1				1,769.4	3획지로 분할	119	3,328.3	1	
2-1				768.0		2-1		768.0					
2-2				790.9		2-2-1		386.7					
120	3,038.5	1-1		437.2		120	3,038.5	1-1		437.2			
		1-2		732.8	2획지로 분할			1-2		732.8	2획지로 분할		
		2		630.9				2		630.9			
		3		876.3				3		876.3			
		4		361.3				4		361.3			
121	2,571.4	1-1		419.2		121	2,571.4	1-1		419.2			
		1-2		412.0				1-2		412.0			
		1-3		640.9				1-3		640.9			
		1-4		548.1	2획지로 분할			1-4		548.1	2획지로 분할		
		2-1		287.4				2-1		287.4			
		2-2		263.8				2-2		263.8			
122	1,351.9	1		308.6		122	1,351.9	1		308.6			
		2		375.1				2		375.1			
		3		506.2	2획지로 분할			3		506.2	2획지로 분할		
		4		162.0				4		162.0			

6. 연립주택용지(C-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C-1	53-2	14,717.3	10	8,423.2	공동건축 권 장	C-1	53-2	14,717.3	10	8,423.2	공동건축 권 장
			11	6,294.1					11	6,294.1	

7. 아파트용지(D-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D-1	53-1	33,749.1	1	520.6	공동건축 권 장	D-1	53-1	33,749.1	1	520.6	공동건축 권 장
			2	570.9					2	570.9	
			3	200.2					3	200.2	
			4-1	4,009.6					4-1	4,009.6	
			4-2	5,540.6					4-2	5,540.6	
			5	3,347.5					5	3,347.5	
			6	2,725.2					6	2,725.2	
			7	778.4					7	778.4	
			8	1,157.9					8	1,157.9	
	9	14,898.2	9	14,898.2							
	69-1	20,697.3	1	5,891.5	공동건축 권 장	69-1	20,697.3	1	5,891.5	공동건축 권 장	
			2	14,805.8				2	14,805.8		
	70	28,370.9	1	28,370.9		70	28,370.9	1	28,370.9		
	93-1	18,948.9	3	18,386.6	공동건축 권 장	93-1	18,948.9	3	18,386.6	공동건축 권 장	
8			562.3	8				562.3			
94	39,757.4	1	30,135.1	공동건축 권 장	94	39,757.4	1	30,135.1	공동건축 권 장		
		2	9,622.3				2	9,622.3			
101	43,298.5	1	43,298.5		101	43,298.5	1	43,298.5			
102	35,665.9	1	35,665.9		102	35,665.9	1	35,665.9			

8. 아파트용지(D-2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D-2	78-1	21,077.2	1	21,077.2		D-2	78-1	21,077.2	1	21,077.2	
	80-1	13,267.1	3	13,267.1			80-1	13,267.1	3	13,267.1	
	108-1	18,427.1	3	18,427.1			108-1	18,427.1	3	18,427.1	

9. 아파트용지(D-3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D-3	46-2	320.0	6	320.0		D-3	46-2	320.0	6	320.0	

10. 상업용지(E-1 용도) : 변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E-1	72-1	4,692.8	2	418.9		E-1	72-1	4,692.8	2	418.9	
			3	582.0					3	582.0	
			4	1,345.7	2획지로 분할				4	1,345.7	2획지로 분할
			5	1,816.6	3획지로 분할				5-1	605.6	
									5-2	605.5	
									5-3	605.5	
				6	529.6		6	529.6			
	74-1	4,599.4	1	385.8		74-1	4,599.4	1	385.8		
			2	972.1				2	972.1		
			3	941.9				3	941.9		
			6	504.1				6	504.1		
			7	787.1				7	787.1		
			8	1,008.4	2획지로 분할			8	1,008.4	2획지로 분할	
	97-1	6,922.7	2	412.9		97-1	6,922.7	2	412.9		
			3	412.8				3	412.8		
			4	443.7				4	443.7		
			5-1	728.6				5-1	728.6		
			5-2	1,463.4	2획지로 분할			5-2	1,463.4	2획지로 분할	
			6	761.4				6	761.4		
			7	818.0				7	818.0		
			8	1,315.0				8	1,315.0		
10			566.9		10			566.9			
99-1	6,194.5	1	659.4		99-1	6,254.5	1	659.4			
		2	460.5				2	460.5			
		3-1	771.5				3-1	771.5			
		4-1	622.7				4-1	622.7			
		4-2	612.7				4-2	612.7			
		7	938.6	2획지로 분할			7	938.6	2획지로 분할		
		8	1,635.1	3획지로 분할			8	1,635.1	3획지로 분할		
		9	554.0				9	554.0			

11. 상업용지(E-2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위치	면 적(㎡)	
E-2	71	3,547.9	1	1,825.1	2획지로 분할	E-2	71	3,547.9	1	1,825.1	2획지로 분할
			2	1,180.9					2	1,180.9	
			3	541.9					3	541.9	
	73	3,451.8	1	528.0		73	3,415.8	1	528.0		
			2	1,891.5				2	1,891.5		
			3	996.3				3	996.3		
	75	3,988.0	1	533.2		75	3,988.0	1	533.2		
			2-1	1,051.8				2-1	1,051.8		
			2-2	1,051.6				2-2	1,051.6		
			3	1,351.4				3	1,351.4		
	95	3,497.9	1	768.3		95	3,497.9	1	768.3		
			2	805.4				2	805.4		
			3	1,541.3				3	1,541.3		
			4	382.9				4	382.9		
	96	4,894.0	1	968.1		96	4,894.0	1	968.1		
			2	526.2				2	526.2		
			3	838.8				3	838.8		
			4	836.2				4	836.2		
			5	850.6				5	850.6		
			6	874.1				6	874.1		
	98	4,510.0	1	554.1		98	4,510.0	1	554.1		
2			942.0	2				942.0			
3			524.2	3				524.2			
4			864.6	4				864.6			
5			858.8	5				858.8			
6			766.3	6				766.3			
100	3,445.4	1	938.0		100	3,445.4	1	938.0			
		2	705.4				2	705.4			
		3	400.6				3	400.6			
		4	651.5				4	651.5			
		5	749.9				5	749.9			

12. 학교용지(F-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F-1	28	12,215.1	1	12,215.1	초 교	F-1	28	12,215.1	1	12,215.1	초 교
	78-2	11,419.5	2	11,419.5	중 교		78-2	11,419.5	2	11,419.5	중 교
	78-3	12,053.0	3	12,053.0	고 교		78-3	12,053.0	3	12,053.0	고 교
	88	11,247.3	1	11,247.3	초 교		88	11,247.3	1	11,247.3	초 교
	109-1	10,780.9	1	10,780.9	초 교		109-1	10,780.9	1	10,780.9	초 교

13. 공공청사용지(G-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G-1	69-2	1,264.9	3	1,264.9	우체국	G-1	69-2	1,264.9	3	1,264.9	우체국
	79-1	1,990.1	1	1,990.1	동사무소		79-1	1,990.1	1	1,990.1	동사무소
	80-3	970.3	1	970.3	경찰서		80-3	970.3	1	970.3	경찰서
	80-4	1,143.3	2	1,143.3	소방서		80-4	1,143.3	2	1,143.3	소방서

14. 주차장용지(H-1 용도) : 변 경

기 정						변 경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도면 표시	가 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위 치	면 적(㎡)	
주 차 장	72-2	1,409.5	1	1,409.5			72-2	1,409.5	1	1,409.5	
	74-2	1,409.1	5	1,409.1			74-2	1,409.1	5	1,409.1	
	97-2	1,411.3	1	1,411.3			97-2	1,411.3	1	1,411.3	
	99-2	1,408.2	6	1,408.2			99-2	1,408.2	6	1,408.2	

15. 획지의 합병 및 분할

-기 정

- 지구단위계획상 분할되는 필지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 분할 할 수 있다
- 2개 이상의 필지가 사용목적이 서로 같은 경우 합병할 수 있다

-변 경 : 분할 및 합병 기준 삭제

※ 기존 획지의 분할 및 합병 조건에 대한 규정은 환지처분이전 환지에정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하여 결정된 것으로

환지처분이 완료된 현재 시점에서의 획지의 분할 및 합병은 정연한 가로경관 형성을 유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차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단독주택용지(A-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5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2. 단독주택용지(A-2)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105,107-1, 108-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A-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A-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180% 이하	
		높 이	• 3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3. 단독주택용지(A-3)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A-3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A-3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륜	• 100%이하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별표2의 A	
		형 태	• 별표3의 A	
		색 채	•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4. 단독주택용지(A-4)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4	6, 25, 29, 45, 46-1, 48-1, 51	용도	허용용도	•별표1의 A-4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A-4의 불허용도
		건 폐 율	•60%이하	
		용 적 륜	•120%이하	
		높 이	•2층이하	
		배 치	•별표2의 A	
		형 태	•별표3의 A	
		색 채	•별표4의 A	
		건축한계선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5. 공동주택용지(B-1:다세대/연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B-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B-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0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B	
		형 태	• 별표3의 B	
		색 채	• 별표4의 B	
		건축한계선	• 중로이상 도로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6. 공동주택용지(C-1:연립)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C-1	53-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C-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C-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40% 이하	
		용 적 륜	• 120% 이하	
		높 이	• 4층 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배 치	• 별표2의 C	
		형 태	• 별표3의 C	
		색 채	• 별표4의 C	
		건축한계선	• 17m이상 도로변에 건축한계선 1m 지정	

7. 공동주택용지(D-1: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1	53-1, 69-1, 70, 93-1, 94, 101, 10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D-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D-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30%이하	
		용 적 륜	• 250%이하	
		높 이	• 20층이하	
		배 치	• 별표2의 D	
		형 태	• 별표3의 D	
		색 채	• 별표4의 D	
		건축한계선	• 12~17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8. 공동주택용지(D-2 : 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2	78-1, 80-1, 108-1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D-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D-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30%이하	
		용 적 륜	•250%이하	
		높 이	•15층이하	
		배 치	•별표2의 D	
		형 태	•별표3의 D	
		색 채	•별표4의 D	
		건 축 한 계 선	•12~17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단, 주된 개구부 있는 경우 15m 후퇴지정	

9. 공동주택용지(D-3 : 아파트-KAL아파트)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D-3	46-2	용 도	허용용도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불허용도	
		건 폐 율		
		용 적 륜		
		높 이		
		배 치		
		형 태		
		색 채		
		건 축 한 계 선		

10. 상업용지(E-1)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1	72-1, 74-1, 97-1, 99-1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E-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E-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330%이하
		높 이		•3~5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별표2의 E
		형 태		•별표3의 E
		색 채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벽 면 지 정 선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 1.0m

11. 상업용지(E-2)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E-2	71, 73, 75, 95, 96, 98, 100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E-2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E-2의 불허용도
		건 폐 율		•70%이하
		용 적 륜		•550%이하
		높 이		•5~8층(주유소 및 액화가스 충전소는 예외)
		배 치		•별표2의 E
		형 태		•별표3의 E
		색 채		•별표4의 E
		건 축 한 계 선		•1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5m •4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3.0m
		벽 면 지 정 선		•상업지역 보행자도로변 : 1.0m

12. 학교용지(F-1)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F-1	28, 78-2, 78-3, 88, 109-1	용 도	허용용도	•별표1의 F-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별표1의 F-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30%이하
			용 적 륜		•100%이하
			높 이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 축 한 계 선		•12~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2.0m •소음에 지장이 있고, 주된 개구부가 없을 경우는 3m, 주된 개구부가 있는 경우는 30m

13. 공공청사용지(G-1)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G-1	69-2, 79-1, 80-3, 80-4	용도	허용용도	• 별표1 G-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 G-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륜	• 250% 이하	
			높 이	•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17~20m 도로변 : 1.0m				

14. 주차장용지(H-1)

구 분	도면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H-1	72-2, 74-2, 97-2, 99-2	용도	허용용도	• 별표1의 H-1의 허용용도
				불허용도	• 별표1의 H-1의 불허용도
			건 폐 율	• 90%이하	
			용 적 륜	• 1,500%이하	
			높 이	• 28m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10~20m 도로변 : 건축한계선 1.0m				

※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 완화적용에 관한 사항

- 본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상업용지의 일부 획지에 대해 공동건축을 권장
-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일부 획지의 용적률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	•별표5의 A-1, A-2, A-3, A-4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		
A-4	6, 25, 29, 45, 46-1, 48-1, 51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별표5의 B-1, C-1, D-1, D-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C-1	53-2		
D-1	53-1, 69-1, 70, 93-1, 94, 101, 102		
D-2	78-1, 80-1, 108-1		
D-3	46-2(6LT)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 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	•별표5의 E-1, E-2 전면공지, 대지안의 조경	-
E-2	71, 73, 75, 95, 96, 98, 100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 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2.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A-1	1-1, 2, 3, 4, 9, 10, 11, 14, 15, 21, 22, 23-1, 23-2, 27, 54-1, 54-2, 55, 56, 57, 58-1, 59, 60, 61, 62, 64, 65-1, 66, 67, 79-2, 81-1, 82, 83, 86, 89, 90, 91, 92	•별표6의A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A-2	5, 24, 63, 68-1, 77-1, 80-2, 85-1, 87, 103-1, 104, 105, 107-1, 108-2		
A-3	7, 8-1, 12, 13, 16, 17-1, 30, 31, 32, 33, 34, 35-1, 36-1, 37-1, 38, 39, 40, 42, 43, 44, 47-1, 49, 50, 52		
A-4	6, 25, 29, 45, 46-1, 48-1, 51		
B-1	19, 20, 26, 109-2, 110, 111, 112,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별표6의 B, C, D 차량 및 주차계획(도면참조)	-
C-1	53-2		
D-1	53-1, 69-1, 70, 93-1, 94, 101, 102		
D-2	78-1, 80-1, 108-1		
D-3	46-2(6LT)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E-1	72-1, 74-1, 97-1, 99-1	•별표6의 E 차량 및 주차계획 (도면참조)	-
E-2	71, 73, 75, 95, 96, 98, 100		

주) B-1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3.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도면참조	•별표7의 보행자전용도로	-

4. 단지내 시설물 배치 계획

도면번호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	원당지구단위 계획구역	•별표8의 식재, 가로장치물, 조명, 포장 등	-

5. 공원 및 녹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공원 녹지	공원 녹지	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수림 및 지형을 이용한 휴게, 운동공간 위주로 계획하며 기존지형 및 수림의 훼손을 최소화 - 구릉지형 공원으로써 기존수림은 적극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계획수림 - 지구주민을 위한 놀이, 운동, 휴식, 산책을 위한 공간을 조성 - 경계부에 차폐녹지대를 설치하여 공원의 존재인식 및 아늑한 위요 공간을 형성 •어린이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성, 흥미성, 쾌적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 및 인근주민의 시설이용 편리 도모가 가능한 놀이공원 계획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의 녹지율을 각각 85%, 45%이상 확보
		녹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충녹지는 방음효과와 경관성 제고를 위하여 인위적 동산(Mounding)의 조성을 원칙으로 하고 양호한 수림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식생을 복층 구조화 유도 •속성수종을 선정, 완충녹지로서의 기능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계획 •경관녹지는 개발로 훼손될 기존수목중 이식 가능한 수목을 녹지대에 이식 처리하여 조기녹화 및 주변 식생과의 조화 도모

6.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군부대 협의 등 과업추진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계획에서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법규나 인천광역시 조례 및 서구 관련조례를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규제내용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들 중 그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준용함
- 본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기 정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 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 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종교집회장 (타종 및 확장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 •교육 및 복지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 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세대/연립, 단독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종교집회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APT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이하
D-2	•APT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계획법령 및 인천시도시계획조례상 불허용도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판매 및 영업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지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군사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시업 등 	70	330	3~5층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판매 및 영업시설(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액화가스 충전소 제외)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공공용지시설 중 교도소, 감화원, 발전소, 군사시설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장례식장(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시업 등 	70	550	5~8층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중 학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1종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분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 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주) 1·2종 근린생활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나, 다, 라, 마 항목

가.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류 등)등의 소매점으
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

나. 휴게 음식점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

다. 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세탁소는 제외)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및 조산소

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라, 바, 자, 타 항목

가. 일반음식점, 기원

라.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바.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 사진관, 표구점, 학원(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 및 무도학원 제외)

타. 노래연습장

[별표 1] : 건축물 용도 분류표 - 변경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A-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시설 중 유치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50	3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의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4/10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80	3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A-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종교시설 (타종 및 확성 장치가 없는 것에 한 함)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학교 시설 중 유치원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00	2층이하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2층이상 주택에 1층이하에 한하며, 규모는 지상층 연면적의 1/2 이하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120	2층이하
B-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 함) •종교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00	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C-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단,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적용에 한 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40	120	4층이하 (단,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로티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D-1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20층이하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PT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법 적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250	15층이하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구분	허용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전층 불허용도	1층 전면불허용도			
E-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 • 묘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시업 등 <p>※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 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330	3~5층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시설, 항만시설 • 공장 • 창고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제외)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 발전시설 •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장례식장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 • 동·식물 관련시설 • 묘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육점, 철물점, 난방, 배관, 페인트, 세탁소, 연탄배급소, 장의사, 목공소, 간판업, 염색, 고물상, 건축자재, 알미늄샷시업 등 <p>※단 정육점, 세탁소에 한하여 도로 전면 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허용</p>	70	550	5~8층

구분	허 용 용 도	불 허 용 도	건폐율 (%이하)	용적률 (%이하)	높이
F-1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단, 유치원은 제외)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30	100	5층이하
G-1	•1종근린생활시설 중 자치센터,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등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 및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60	250	5층이하
H-1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 건축물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90	1500	28m이하

※ 관련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은 개정 법률을 따름

[별표 2] : 건축물 배치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배치
<p>단독주택 용지</p>	<p>A-1 A-2 A-3 A-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남향배치를 권장하기 위해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단, 기존건축물이 있는 경우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적용) ○ 2면이상 도로에 접한 획지는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벽면의 방향이 도로의 방향과 일치되도록 배치 ○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가 불가능한 구획도로에 접한 획지는 진입구변으로 옥외주차 및 마당을 설치하여 가능한 한 도로와의 이격 유도
<p>공동주택 용지</p>	<p>B-1 C-1 D-1 D-2 D-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정남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를 적용하여 배치 ○ 광로면은 교통소음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 직각 배치를 권장 ○ 12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m, 17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m, 20m도로변의 건축한계선 - 1.5m ○ 아파트의 층수는 변화 있는 층수배치로 경관 및 식별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권장 <p>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p>
<p>상업용지</p>	<p>E-1 E-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된 벽면 방향은 접한 전면가로와 일치 ○ 2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는 건축물 전면의 도로폭이 넓은 도로를 향하도록 할 것 ○ 10m이상 도로변에 접한 획지에 대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의 활용 및 건축물 전면 개방감이 확보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 20m, 40m 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각각 1.0m, 1.5m, 3.0m 지정 ○ 보행자도로변 양측에 보행환경 향상을 위해 벽면한계선을 1m(1층에 한함)를 지정
<p>공공청사</p>	<p>G-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계가 높은 도로에 면하여 건축물 전면을 향하도록 하며, 주차장 및 차량출입구 등 옥외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권장 ○ 20m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행공간 확보(건축한계선 : 1m)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 3] : 건축물 형태 계획 - 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축물의 형태 및 외 관
단 독 주 택 용 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지붕면적의 70%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을 설치토록 권장하며, 경사지붕의 구배는 3/10 ~ 7/10 ○옥상의 물탱크 설치는 지양하며, 가압급수 방식으로 권장 ○담장 및 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장 및 대문은 가로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단독주택의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를 담장 1.2m, 대문 1.8m 이하로 규제 ○담장과 대문의 형태는 투시형으로 하되 가급적 생울타리 등 자연요소를 활용하도록 권장 ○건축물의 외벽은 건축물별로 동일한 재료를 사용(외벽 색상은 원색사용 지양) ○건축물의 외벽은 골조가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의장, 재료, 색채에 있어 3면 이상의 벽면에서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함 ○근린생활시설의 1층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권장)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권장)
공 동 주 택 용 지	B-1 C-1 D-1 D-2 D-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각적 개방감 부여 및 심리적 중압감 배제 등을 위해 주동의 최대길이를 80m 이내로 제한 ○지 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함 - 경사지붕은 건축물 지붕면적의 70%이상을 경사지붕으로 설치 - 경사지붕의 설치시 구배는 3/10 ~ 7/10 ○경사지붕 설치시 옥상의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담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록 외곽도로에 면한 단지경계부에 단지의 관리와 안전을 위해 투시형이나 생울타리 담장으로 1.2m이하 설치 ○대지를 기준으로 북쪽에 도로가 면해 있을 경우 설비배관 설치는 측면벽을 이용(권장)→ B1용도에 한함 <p>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p>
상 업 용 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면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의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대지내의 건축물은 입면형태가 주변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 ○건축물의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1층전면의 서터는 벽면의 50%이상을 투시형으로 설치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반영

[별표 4] : 건축물 색채 계획 - 변경없음

용 도	도면 표시	건 축 물 의 색 채
단독 주택 용지	A-1 A-2 A-3 A-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색의 사용을 금하며(강조색은 가능) 저채도 색채를 사용 ○ 건축물의 좌우배면은 전면색채와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 ○ 검정색 계통의 외벽 마감재료 사용을 지양하여 밝은 분위기의 도시경관 형성(단 강조색은 가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
공동 주택 용지	B-1 C-1 D-1 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랜드마크(Landmark) 기능 및 단지내 쾌적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 사용 ○ 인천시의 시색인 청색 또는 구색인 하늘색을 자연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채도 및 명도를 낮추어 주조색으로 사용토록 권장 ○ 지붕의 색과 울타리를 동일계통 색채사용 권장
	D-3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 용지	E-1 E-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활동축으로서 밝고 명량한 색조계열을 사용하며, 원색의 사용을 금함(강조색은 가능) ○ 건축물의 전면색채는 동일용도의 인접건축물과는 동일계통의 색채를 사용하여 식별성 강화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 색채는 파랑, 회색, 녹색, 적황색 계통을 위주로 권장

※ 색채의 분류

○ 색채의 분류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3가지로 분류하며, 이들 색채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다양하면서도 통일감 있는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함

- 주조색 : 대상지내 건축물의 도로변에 접하는 가장 잘 보이는 면에 배색되어 시각적 인상을 결정하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70%이상을 차지
- 보조색 : 주조색 보다는 좁은 면적에 배색되어 주조색 및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는 색으로서 외벽면적의 10~30%를 차지
- 강조색 : 건축물의 선이나 점같이 매우 좁은 면의 특히 강조할 곳에 배색되어 주조색이나 보조색과 강한 대비를 이루면서 전체에 활력을 주고 변화를 주는 색이며 외벽면적의 10%미만을 차지

[별표 5] :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전면공지 지정 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광역시건축조례 기준을 준용하여 대지면적의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토록 유도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아파트단지의 녹지면적은 30% 이상으로 확보하여 조경 식재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12m이상의 도로변(공동주택지내) 대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9조에 의해 설치하는 조경시설을 지정한 곳은 공공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가로변 소공원(쌈지공원 - Pocket park)으로 조성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쌈지공원을 조경시설로 조성시 45㎡이상 설치 ○지상주차장이 넓은 경우, 사이에 화단 등을 조성하여 식재
	D-3	전면공지대지내조경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상업용지	E-1 E-2	전면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인도와 동일한 포장재료 및 패턴사용을 유도하고 보행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화단, 담장, 노상주차장 등) 설치를 금지하며 인접 보도와 같은 높이로 조성 ○차도부속형 전면공지의 경우 전면차도와 단차를 없애고 동일한 포장재료 사용 등으로 차량통행의 장애요소 제거 ○전면공지 지정시 지상에 대한 공공의 이용권을 확보하고 지하는 민간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 ○40m 도로변 상업지역의 모퉁이변(도면참조)을 공개공지로 확보(규제)하여 이용자의 보행환경 활성화 및 휴게공간, 쉼터 역할을 유도 ○공개공지는 최소면적 45㎡이상으로 확보 ○공개공지의 설치형태는 피로티구조(1층 높이 4m이상), 쌈지공원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 가능 ○공개공지의 조성은 전면의 인도 및 전면공지와 조성형태를 통일시켜서 조성하게 하며, 인접대지의 공개공지나 쌈지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연계 조성을 권장
		대지내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수는 인천시 시화인 장미의 식재를 권장 ○40m도로변의 대단위시설에는 도로와 건축선 사이에 식재로 수림대 조성

주) B-1 용도에서 단독주택 건축시는 A-2의 지구단위계획 내용 준용

[별표 6] :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용도	도면 표시	차량 및 주차에 관한 계획	
단독주택용지	A-1 A-2 A-3 A-4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필지의 진출입은 연접 도로중 폭이 좁은 도로에서의 진출입 권장 ○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는 가구의 장·단변 교차로 부근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출입불허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차로 측단,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육교등으로부터 10m이내 구간 (단, 필지의 규모가 협소하여 차량출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공동주택용지	B-1 C-1 D-1 D-2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단지별로 1개씩만 허용함으로써 차량 혼잡방지 및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 ○ 단지내 동선을 Cluster 형식으로 계획하여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차량동선과 보행동선과의 상충을 최소화 ○ 원활한 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교차 되도록 하며, 교차부에서 30m이상 이격하여 배치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의외곽도로와 T형 교차를 원칙으로 하며, 차량출입구가 타 단지의 차량출입구와 30m이상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형 교차를 유도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제시한 설치기준을 적용 ○ 지하주차장은 아파트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하통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하며,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권장 ○ B-1용도(다세대/연립)에서의 건축시 가구당 1대이상 주차시설 확보 (권장)
	D-3	차량 동선 주차 시설	<p>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p>
상업용지	E-1	차량 동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폭 이상의 도로에서 주차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통로의 폭은 대지경계선에서 각각 3m이상 확보) ○ 20m폭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교차가각부의 경우 각 10m구간에서의 주차출입을 금지 ○ 통로주차램프 및 카엘리베이터의 시작부분은 도로와 접하는 건축선에서 최소 3m이상 이격시켜서 대기주차에 의한 보행장애 방지
	E-2	주차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준용함 ○ 300㎡이하의 대지가 옥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2개 대지별로 공동으로 주차장 설치를 권장하여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고 주차출입구의 개소 축소

[별표 7]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도면 표시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A-1, A-2 A-3, A-4 B-1, C-1 D-1, D-2 E-1, E-2	보행자 전용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의 통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도로로서 포장패턴이나 상징적인 환경장치물 설치를 유도하여 장소성과 활동성을 제고 ○ 녹지조성보다는 포장 및 시설물 위주로 설치하고, 인접대지내 공지 및 전면공지와 연계 조성 ○ 공공성이 있는 건축물에 장애인 램프 설치를 고려하여 대지의 높이와 주출입구의 높이차를 15cm 이내로 권장
D-3	보행자 전용도로	D-3(KAL 아파트)용도는 향후 KAL아파트 편입토지로 KAL 아파트 부지의 내용을 준용함

[별표 8] : 단지 내 시설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구분	단지내 시설물 배치계획
가로 시설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의 형태, 크기, 배치, 구조 및 재료는 주위환경과 어울리도록 설계 ○ 보행이나 교통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장애인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 대중 인식이 높은 옥외시설물 또는 안내판 등의 시설물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 상호보완적 가로시설물을 집합시켜 여러 기능을 갖도록 설계 ○ 형태 상호간에 통일성, 시각적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하여 가로 장치물 설계
식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 및 계절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수종을 선택하여 가로별로 특징적 경관을 연출하도록 식재 ○ 서구의 구목인 은행나무 등의 식재 유도 ○ 차도로부터 0.5m, 건물외벽으로부터 2~3m 이상 떨어져 식재 ○ 도로 교차점 주변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 좌우 20m의 구간내에 수목의 식재 금지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가 적고 보수가 용이하며 차량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내구성 재료의 사용 - 재료는 아스팔트 및 유색아스팔트 사용 ○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의 지루함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패턴의 블록 사용 - 포장구획을 소단위로 하여 친근감 유지 ○ 연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횡단로 등에서는 경사면으로 처리 - 재료는 화강석(인조화강석)등 차량에 의해 파손되지 않는 재료 사용
조명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교통량, 도로폭, 바닥포장의 재질, 건축물의 재질(반사정도) 등을 고려하여 높이, 위치, 밝기 등을 결정하여 설치 ○ 보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적으로 일정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가급적 보도폭 전체로 빛이 닿도록 계획
기타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교, 계단, 경사로의 설치 및 조명시설, 옥외가로시설물 등 본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반 관련 규정의 기준을 준용토록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도로구조령의 도로 조명 시설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인천시 C·I·P 기준 등)
옥외광고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 따름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3 - 134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2. 02.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 개선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 권고에 따라 외부강의 대가기준을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로 쉽고 자연스러운 자치법규로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직무관련 강의·강연 대가기준 단서 신설 (안 제15조제2항)
 -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별표1])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 ‘~조 규정에 의한’ → ‘조에 따른, 따라’
 - ‘당해’ → ‘해당’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 12. 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72,
FAX 032-560-270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을 “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주민센터”로 한다.

제2조제2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상급자에게는 대하여”를 “상급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직무관련 강의·강연의 대가는 [별표1]에 따른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1시간)

구 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u>본청·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u>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감사·인사·심사평가·상훈 등 단위 업무담당자와 <u>당해</u> 공무원</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 ----- -----<u>본청·</u> <u>구의회·직속기관·사업소·동 주민센터</u>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 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 <u>해당</u> ----- -----</p>

현 행	개 정 안														
<p>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1. 2. (생략)</p> <p>3. 기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우이웃돕기 시설 및 단체 등에 기증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은 다음 각 호----- -----</p> <p>1.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 ----- 대해서----- -----.</p> <p>④ 제3항에 따라 ----- ----- ----- ----- ----- ----- -----.</p> <p>[별표1] 외부장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 천원/1시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구청장</th> <th>4급 이상</th> <th>5급 이하</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상한액</td> <td>300</td> <td>230</td> <td>120</td> <td rowspan="2">원고료·여비는 미포함</td> </tr> <tr> <td>1시간 초과</td> <td>200</td> <td>120</td> <td>100</td> </tr> </tbody> </table> <p>※ 동 기준은 외부장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p>	구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구분	구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30	120	원고료·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관계법령 발취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1항</p>
<p>①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세부적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p>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2항</p>
<p>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2></p>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3항</p>
<p>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이 부당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0.11.2></p>
<p><input type="checkbox"/>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제4항</p>
<p>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11.2></p>